

# 2014 스포츠산업 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승인협의번호  
제 11321 호



---

# 2014년 스포츠산업 실태조사

---

2013년 기준 조사

2014. 12

I. 2013년 기준 조사 개요			
1. 2013년 기준조사 조사 방향	3	<표 I-1> 조사대상	15
2. 2013년 기준조사 조사 목적	4	<표 I-2> 대분류별 사업체수 추정결과	19
3. 2013년 기준조사 특징	5	<표 I-3> 대분류별 모집단 비율(구분류기준)	19
4. 조사내용 및 방법	14	<표 I-4> 대분류별 모집단 비율(신분류기준)	19
II. 스포츠산업체 일반현황		<표 I-5> 대분류별 종사자수 비율(구분류기준)	20
1. 사업체 수	30	<표 I-6> 대분류별 종사자수 비율(신분류기준)	20
III. 스포츠산업 실태조사 결과		<표 I-7> 대분류별 표본수 비율 비교(구분류기준)	22
1. 총 괄	47	<표 I-8> 대분류별 표본수 비율 비교(신분류기준)	22
2. 매출액	48	<표 II-1> '11~'13년 대분류별 사업체수 추정결과(구분류 기준)	30
3. 종사자수	56	<표 II-2> '11~'13년 14개 중분류별 사업체수 현황(구분류 기준)	31
4. 사업실적	64	<표 II-3> '13년 세세분류별 사업체수 추정결과(신분류 기준)	32
5. 인력충원 및 사업체 경영전망	72	<표 II-4> '13년 20개 중분류별 사업체수 현황(신분류 기준)	34
6. 특성항목	74	<표 II-5> '12~'13년 설립년도 비율	35
7. 스포츠산업 현안 실태조사 결과	78	<표 II-6> '13년 조직형태 및 업종별 사업체 수(구분류기준)	36
8. 성과 및 제언	82	<표 II-7> 조직형태별 사업체 수(구분류기준)	37
IV. 부록		<표 II-8> '13년 조직형태 및 업종별 사업체 수(신분류기준)	38
【부록 1】 스포츠산업 특수분류	89	<표 II-9> 조직형태별 사업체 수(신분류기준)	39
【부록 2】 한국표준산업분류 설명 - 스포츠산업분류 부문	91	<표 II-10> '11~'13년 종사자 수별 사업체 수(구분류기준)	40
【부록 3】 스포츠산업 관련 용의 정의	109	<표 II-11> '11~'13년 종사자수별 사업체 수(구분류기준)	41
【부록 4】 조사표와 결산서의 관계	113	<표 II-12> '13년 종사자 수별 사업체 수(신분류기준)	41
【부록 5】 스포츠산업실태조사 조사표	115	<표 II-13> 종사자 수별 사업체 수(신분류기준)	42
		<표 II-14> '11~'13년 사업종류별 사업체 수(구분류기준)	43
		<표 II-15> '13년 사업종류별 사업체 수(신분류 기준)	44
		<표 III-1> '09~'13년 기준 스포츠산업 전체 요약	48
		<표 III-2> '11~'13년 스포츠산업 산업분류별 매출액(구분류 기준)	49
		<표 III-3> '12~'13년 스포츠산업 산업분류별 매출액(신분류 기준)	50
		<표 III-4> '11~'13년 사업종류별 매출액(구분류기준)	52
		<표 III-5> '12~'13년 사업종류별 매출액(신분류기준)	52
		<표 III-6> '12~'13년 조직형태별 매출액	53

<표 III-7> '11~'13년 종사자수별 매출액(구분류 기준)----- 55  
 <표 III-8> '12~'13년 종사자수별 매출액(신분류 기준)----- 55  
 <표 III-9> '11~'13년 스포츠산업 산업분류별 종사자수(구분류 기준)----- 57  
 <표 III-9> '11~'13년 스포츠산업 산업분류별 종사자수(구분류 기준) (계속) 57  
 <표 III-10> '11~'13년 사업종류별 종사자수(구분류 기준)----- 58  
 <표 III-11> '12~'13년 스포츠산업 산업분류별 종사자수(신분류 기준)----- 59  
 <표 III-12> '12~'13년 사업종류별 종사자수(신분류 기준)----- 61  
 <표 III-13> '12~'13년 조직형태별 종사자수(신분류 기준)----- 62  
 <표 III-14> 종사자 수별 종사자(구분류 기준)----- 63  
 <표 III-15> '12~'13년 종사자수별 종사자(신분류 기준)----- 63  
 <표 III-16> '12~'13년 스포츠산업 전체실적 및 비중(구분류 기준)----- 65  
 <표 III-17> '12~'13년 20개 중분류별 실적 현황(신분류기준)----- 66  
 <표 III-18> '09~'13년 스포츠산업 사업실적----- 67  
 <표 III-19> '11~'13년 사업종류별 내수·수출실적(구분류 기준)----- 68  
 <표 III-20> '12~'13년 사업종류별 내수·수출실적(신분류 기준)----- 68  
 <표 III-21> '12~'13년 사업종류별 영업이익률(구분류기준)----- 70  
 <표 III-22> '12~'13년 신분류기준 사업종류별 영업이익률(신분류기준)----- 70  
 <표 III-23> 사업종류별 인력충원(신분류기준)----- 72  
 <표 III-24> 사업종류별 경기전망(신분류기준)----- 73  
 <표 III-25> '11~'13년 운동 및 경기 용품유통 임대업 상품별 구성비(구분류기준) - 74  
 <표 III-26> '12~'13년 스포츠 용품업 상품별 구성비(신분류기준)----- 75  
 <표 III-27> 스포츠 시설업 연간 영업개월수 및 이용인원(구분류기준)----- 76  
 <표 III-28> 고객유형별 매출액 비중(구분류기준)----- 77  
 <표 III-29> '12~'13년 스포츠서비스업 고객유형별 매출액 비중(신분류기준) 77  
 <표 III-30> '09 ~'13년 대외경쟁력 강화부문----- 78  
 <표 III-31> 육성발전 장애요인----- 79  
 <표 III-32> 육성발전 지원부문----- 80  
 <표 III-33> 매출 증대방안----- 81

그림 I-1 대분류별 모집단 비율(신분류기준)----- 20  
 그림 I-2 대분류별 종사자수 비율(신분류기준)----- 21  
 그림 I-3 대분류별 모집단 및 표본 비율(신분류기준)----- 23  
 그림 II-1 '11~'13년 기준 모집단수 비교(구분류기준)----- 31  
 그림 II-2 '13 설립년도 비율 (신분류 기준)----- 35  
 그림 II-3 조직형태별 사업체 비율(구분류기준)----- 37  
 그림 II-4 조직형태별 사업체 비율(신분류기준)----- 39  
 그림 II-5 종사자 수별 사업체 비율----- 42  
 그림 II-6 '13 사업종류별 사업체 비율----- 44  
 그림 III-1 사업종류별 매출액 비율(2013년)----- 53  
 그림 III-2 조직형태별 매출액 비율(2013년)----- 54  
 그림 III-3 종사자수별 매출액 비율(신분류 기준)-2013년----- 56  
 그림 III-4 사업종류별 종사자수 비율(신분류 기준)-2013년----- 61  
 그림 III-5 조직형태별 종사자수 비율(신분류 기준)-2013년----- 62  
 그림 III-6 종사자 수별 종사자수 비율(신분류 기준)-2013년----- 64  
 그림 III-7 스포츠산업 사업실적 비율(신분류 기준)-2013년----- 67  
 그림 III-8 사업종류별 내수/수출 실적 비율(신분류 기준)-2013년----- 69  
 그림 III-9 사업종류별 영업 이익률(신분류기준)-2013년----- 71  
 그림 III-10 사업종류별 인력충원----- 72  
 그림 III-11 사업종류별 경기전망----- 73  
 그림 III-12 운동·경기용품제조업 상품별 구성비----- 75  
 그림 III-13 스포츠 시설업 연간 이용객 비교----- 76  
 그림 III-14 고객유형별 매출액 비중----- 78  
 그림 III-15 스포츠산업 대외경쟁력 강화 부문(신분류기준)-2013년----- 79  
 그림 III-16 스포츠산업 육성발전 장애요인(신분류기준)-2013년----- 80  
 그림 III-17 스포츠산업 육성발전 지원부문(신분류기준)-2013년----- 81  
 그림 III-18 스포츠산업 매출증대방안(신분류기준)-2013년----- 82

1. 본 조사 자료는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31일까지를 기준으로 스포츠산업 통계조사(정부승인통계 승인번호 제11321호) 결과를 종합 집계, 분석한 결과이며, 조사주기는 1년임
2. 스포츠산업은 2007.4.6 개정(법률 8333호)된「스포츠산업진흥법」에 명시된 ‘스포츠와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라고 정의되지만 그 범위와 내용이 매우 다양하며 명확하지 않음. 따라서 본 「2014 스포츠산업 실태조사」는「한국표준산업분류」에 특수분류로 분류된 「스포츠산업 특수분류 V. 3」를 적용하여 조사를 실시함
3. 2011년 기준조사까지는 15개 중분류(45개 세세분류)로 구축된 스포츠산업 특수분류 V.2(이하 구분류)로 진행이 되었으며, 2012년 기준조사 부터는 20개 중분류(65개 세세분류)로 새로 개편된 「스포츠산업 특수분류 v.3」(이하 신분류)적용하여 조사를 진행하여, 과거자료와의 시계열 분석을 위해 구분류와 신분류 체계로 모두 과거자료와 비교하여 분석함
4. 2013년 기준조사시 2012년 기준조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해당 업체별 사업내용을 확인하는 모집단 정비를 실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기존 모집단 대비 하위 업종에서 모집단 크기의 차이가 발생함
5. 본 조사는 스포츠산업(세세분류)을 모집단으로 한 후 전국단위로 표본을 추출하여 전체를 추정하였으므로 자료 이용 시 전국 이상 단위로만 활용하여야 함
6. 조사결과는 실태조사(표본조사) 결과 및 타조사 자료인용으로 이루어짐

7. 조사수행은 전문 조사 기관인 ㈜포커스컴퍼니가 총괄적으로 조사를 진행함
8. 실태조사 결과 중 업체수, 매출액, 종사자수, 영업비용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추정된 수치임을 이용에 참고하기 바람
9. 조사항목별 집계과정에서 수치는 반올림한 값으로 이로 인하여 하위분류의 합계가 상위분류의 합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10. 본 조사에서는 스포츠산업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추출하여 집계하였으나 기업회계 기준에서 업종별 분리가 어려운 경우 업종별 비중을 적용하여 추정하였으므로 실제 값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11. 내검과정에서 전년도 조사실적에 오류가 발견된 사업체는 수정 보완하여 집계하였음
12. 해당 자료가 없거나 미상일 경우는 [-]을 표시함
13. 본 보고서의 내용을 인용할 때에는 “「2014년 스포츠산업실태조사(문화체육관광부)」 ○○페이지에서 전재 또는 역재”라고 기재하여야 함
14. 본 보고서에 실린 자료에 대한 문의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044-203-3154),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개발원 산업기획팀(02-970-9573)에 문의바람. 조사결과 및 분석내용은 KOSIS국가통계포털(<http://kosis.kr>)에서도 볼 수 있음

01

2013년 기준 조사 개요

## 1 2013년 기준조사 조사 방향

- 스포츠산업 실태조사는 2013년 기준조사까지 7회가 진행된 사업이며, 국가승인통계로서는 2009년 기준조사부터 5회째 실시된 사업임
  - 2008년 기준조사까지의 스포츠산업 통계는 정부승인통계로 지정되어 공식적으로 조사·산출되는 것이 아니라 주무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정책의사결정의 실용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산출되고 있는 실정이었음
  - 따라서 스포츠산업 전체의 정확한 모집단을 기초로 산출되는 체계적이고 신뢰성 있는 자료 제공을 위하여 국가승인통계로 지정(2010년)받고 2014년 다섯 번째로 사업을 진행함
- 2013년 기준조사에서는 2012년 기준 조사시 개편된 스포츠산업 특수분류체계를 적용하여 스포츠산업을 총 65개 세세분류로 진행함(「스포츠산업 특수분류 V. 3」 적용 유지)
  - 2011년 기준조사까지는 스포츠산업을 총 45개 세세분류로 구성하여 진행됨(「스포츠산업 특수분류 V. 2」 적용)
- 2013년 기준조사에서 연도별, 부문별 비교분석이 가능하도록 표준화된 구축 틀을 활용하여 2013년 기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전년도 조사와 시계열 분석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 스포츠산업의 대표 통계가 될 수 있도록 진행함
- 2013년 기준조사에서는 스포츠산업 특수 분류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기존 표본 추출틀을 재 정비함으로써 모집단의 대표성을 확보함
- 스포츠산업 진흥 및 육성을 위한 공식적인 지표 활용을 위해 국가승인지정통계를 유지하고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실사를 통하여 신뢰성 있는 실태조사를 진행함
  - 기업경영 정보 공시 사이트 및 기관별 홈페이지의 경영 공시자료, 기관 담당자 제공 자료 등과 비교 검토를 통해 신뢰성 있는 결과 도출을 위한 검증을 실시함

## 2 2013년 기준조사 조사 목적

-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개편된 스포츠산업 특수분류 적용을 통한 국가승인통계 유지
  - 기존 스포츠산업 경영정보조사는 주무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의 내부 정책의사결정에 목적을 두고 진행한 사업이었지만, 2009년 기준조사부터 2013년 기준조사까지 국민에게 스포츠산업의 사회적, 경제적 가치 등을 알리기 위한 공표의 목적을 두고 진행함
- 최신 모집단 확보를 위한 모집단 정비
  - 모집단 파악은 통계조사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써 2013년 기준조사에서는 2012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의 결과 중 스포츠산업분류에 해당하는 사업체 리스트의 사업체별 사업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표본추출 틀로 활용하여 최신 모집단 확보에 주력
  - 2012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 자료에서 조사모집단의 포괄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스포츠산업 총 65개 세세분류 중 10개 산업세세분류의 모집단 정비조사를 통해 모집단을 보완한 명부 사용
  - 2012년 기준 조사시 일부 업체의 경우 스포츠 분야 사업 영위 비율이 미미한 업체가 포함되는 문제가 있었으므로, 2013년 기준 조사시에는 보다 정확한 스포츠산업의 모집단을 구성하기 위하여 스포츠분야 사업 영위 비율이 10% 이상인 업체에 한하여 스포츠산업에 해당하는 업체로 정의하고 모집단을 구성함
  - 모집단 정비를 통하여 스포츠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체수를 추정함
- 스포츠산업 정책 활용 목적뿐만 아니라 스포츠산업 진흥 및 육성의 공식적인 지표 활용의 극대화 추구
  - 스포츠산업 실태조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실사를 통한 공표
  - 스포츠산업의 특성상 영세업체가 많아 이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통계청과의 긴밀한 협조, 자료수집원 교육, 각 지자체의 사업체 DB 등을 이용한 체계 구축

- 총량개념의 통계를 통한 스포츠산업 전반의 실태 및 동향을 파악
  - 스포츠산업시장의 전체규모 뿐만 아니라 종사자 규모, 인력채용 현황, 영업손익 등 총량개념의 통합적인 자료 산출을 목적으로 진행하였음
  - 스포츠산업시장의 사업체 경기전망, 인력채용 현황 등의 내용뿐만 아니라 스포츠서비스업의 경우 연간이용객 현황 등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였음

## 3 2013년 기준조사 특징

- 「스포츠산업 특수분류 V. 3」 적용 유지
  - 2012년 기준 스포츠산업실태조사에 이어서 개편된 스포츠산업 특수분류체계를 적용하여 스포츠산업을 총 65개 세세분류로 진행
  - 2011년 기준조사까지는 스포츠산업을 총 45개 세세분류로 구성하여 진행됨
    - 조사 결과 활용시 구분류 기준으로 3개년 결과 비교, 신분류 기준으로 2개년 결과를 비교 가능함
- 모집단 보완
  - 2012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 자료에서 조사모집단의 포괄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2012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의 결과 중 스포츠산업분류에 해당하는 사업체 리스트의 사업체별 사업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갱신한 스포츠산업 특수분류를 활용하여 모집단을 구성함
  - 또한, 모집단의 정확성을 확보 하고자 스포츠산업 총 65개 산업세세분류 중 10개 산업세세분류의 모집단 정비조사를 통해 모집단을 보완한 명부를 사용함
    - 모집단 정비 조사시 실질적으로 스포츠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업체 분류를 위하여 스포츠 관련 사업 영위 비율이 10% 이상인 업체에 한하여 스포츠산업 영위 업체로 규정함
  - 모집단 보완 결과 2012년 기준조사와 비교하여 세부 업종별 모집단 규모의 차이가 발생하였으며 특히, 스포츠 신발 도·소매업의 경우 2012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의 사업 내용

에 골프, 등산, 볼링화, 스포츠화, 운동화를 취급하는 사업체로 분류한 결과 전년도 모집단 규모 대비 차이가 크게 나타남

- 또한, 캠핑용 직물제품 제조업과 스포츠 관련 신발 부분품 제조업의 경우 사업체별 사업내용 확인과 모집단 정비조사 과정을 통하여 스포츠와 무관한 천막 또는 일반 신발 부분품 제조업과 스포츠 산업 영위 비율 10% 미만인 업체를 제외하여 모집단이 줄어들어 나타났고, 기타 스포츠 마케팅업의 경우는 전년 대비 모집단의 규모가 늘어남



스포츠산업 특수분류		2012 기준 조사	2013 기준 조사	차이 (2013 -2012)			
코드	분류						
전체		84,246	90,493	6,247			
스포츠 시설업	스포츠 시설 운영업	1010101	실내 경기장 운영업	89	89	0	
		1010102	실외 경기장 운영업	66	70	4	
		1010103	경주장 운영업	15	17	2	
		1010201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596	632	36	
		1010202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4,995	5,517	522	
		1010203	수영장 운영업	199	234	35	
		1010204	볼링장 운영업	534	544	10	
		1010205	당구장 운영업	16,351	15,133	-1,218	
		1010206	골프연습장 운영업	7,139	7,429	290	
		1010207	스포츠 무도장 운영업	201	200	-1	
		1010208	체육공원 운영업	44	42	-2	
		1010209	기원 운영업	1,208	1,137	-71	
		1010301	골프장 운영업	362	376	14	
		1010302	스키장 운영업	20	17	-3	
		1010401	낚시장 운영업	698	674	-24	
		1010499	기타 수상스포츠시설 운영업	464	523	59	
		1019900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1,900	2,072	172	
	스포츠 시설 건설업	1020001	스포츠시설 조경 건설업	384	437	53	
		1020002	스포츠 토목시설물 건설업	147	171	24	
	스포츠 용품업	운동 및 경기 용품업	2010101	운동 및 경기용 장비 제조업	245	285	40
			2010102	체력단련용 장비 제조업	184	206	22
			2010103	자전거 제조업	10	40	30
			2010104	낚시 및 수렵용 장비 제조업	259	297	38
			2010105	놀이터용 기구 제조업	25	43	18
			2010106	스포츠 응원 용품업	15	23	8
			2010199	기타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	15	29	14
			2010201	스포츠 의류 제조업	1,340	1,219	-121
			2010202	캠핑용 직물제품 제조업	407	170	-237
			2010203	스포츠 관련 직물제품 제조업	83	61	-22
			2010204	스포츠 관련 의류부분품 제조업	137	54	-83
			2010301	스포츠 가방 제조업	220	172	-48
			2010302	스포츠 신발 제조업	168	150	-18
			2010303	스포츠 관련 신발부분품 제조업	469	176	-293

스포츠산업 특수분류		2012 기준 조사	2013 기준 조사	차이 (2013 -2012)				
코드	분류							
스포츠 용품업	운동 및 경기 용품 유통 및 임대업	2020101	운동 및 경기용구 도매업	1,294	1,492	198		
		2020102	자전거 도매업	156	141	-15		
		2020103	스포츠 의류 도매업	596	626	30		
		2020104	스포츠 가방 도매업	24	16	-8		
		2020105	스포츠 신발 도매업	61	214	153		
		2020201	운동 및 경기용구 소매업	9,197	10,057	860		
		2020202	자전거 소매업	2,683	2,855	172		
		2020203	스포츠 의류 소매업	7,807	9,921	2,114		
		2020204	스포츠 가방 소매업	65	38	-27		
		2020205	스포츠 신발 소매업	212	1,589	1,377		
		2020206	스포츠 관련 무점포 소매업	263	468	205		
		2020300	운동 및 경기용품 임대업	766	836	70		
		스포츠 서비스업	스포츠 경기 서비스업	3010100	스포츠 경기업	42	53	11
				3010201	스포츠 `북권발행 및 판매업	1	1	0
				3010299	기타 스포츠 배팅업	54	55	1
				3010301	스포츠 에이전트업	8	27	19
				3010302	회원권 대행 판매업	113	126	13
3010303	스포츠 마케팅 대행업			14	18	4		
3010399	기타 스포츠 마케팅업			374	603	229		
스포츠 서비스업	스포츠 정보 서비스업			3020101	스포츠 신문 발행업	13	11	-2
				3020102	스포츠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	40	39	-1
				3020103	스포츠 관련 라디오 방송업	0	0	0
		3020104	스포츠 관련 지상파 방송업	0	0	0		
		3020105	스포츠 관련 프로그램 공급업	3	3	0		
		3020106	스포츠 관련 유선 방송업	2	2	0		
		3020107	스포츠 관련 위성 및 기타 방송업	1	1	0		
		3029900	기타 스포츠 정보서비스업	14	13	-1		
		스포츠 교육기관	3030001	스포츠 교육기관	17,695	18,905	1,210	
			3030099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	2,609	2,666	57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3990101	온라인 모바일스포츠게임개발및공급업	17	57	40			
	3990199	기타 스포츠 게임 개발 및 공급업	6	5	-1			
	3990200	스포츠 여행업	1,127	1,416	289			

● 현장조사

- 조사대상 표본수가 전국으로 산재되어 있어 업무량(표본수)이 적은 지역은 조사원 채용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각 지방 직영 실사 조직을 활용한 현장조사원을 투입하여 현장조사를 수행
- 마사회, 경륜장 등 지사(점)별 실적 파악이 어려운 경우 본부(기업체)에서 일괄 조사하는 방법을 병행하여 조사의 정도 및 효율성 제고
- 복권발행 및 판매업, 스키장운영업, 스포츠 관련 프로그램 공급업, 스포츠 관련 유선 방송업, 스포츠관련 위성 및 기타 방송업, 기타 스포츠 게임 개발 및 공급업 등 사업체 개수가 적은 업종은 전수조사 및 본사를 통한 일괄조사를 병행하여 조사의 정도를 제고
- 표본대체를 통한 편향 및 오차 감소와 현장 업무부담 경감을 위하여 당초 표본 추출시 over sampling을 통하여 최소 표본수 확보에 노력

● 조사방법

- 조사방법은 Mixed Mode Survey를 활용한 단계적 실시
  - ※ 조사원의 직접 방문을 원칙(자기기업식 병행)으로 하고 방문 조사가 어려운 일부 업체는 이메일 및 팩스조사 병행

● 조사표

- 단조로운 설문 조사표를 가능한 구체화하여 통계조사 결과에 대한 양적, 질적 분석 확대
- 응답자의 적극적인 협조유도를 위하여 응답자 맞춤형 조사표 설계 및 조사방식을 도입
- 조사표의 일관성 및 항목 간 연계성을 고려한 문항 재구성

● 조사결과 내검 및 자료처리

- 사전 조사자료 처리계획을 수립하고 조사결과 내검 및 집계 철저히 통계정확성 제고
- 2012년 기준조사와 동일하게 통계청의 나라통계시스템을 이용하여 자료처리 실행
  - ※ 나라통계시스템은 통계의 기획부터 보고서 생산까지 통계작성 전 과정을 국가통계생산 표준프로세스(KSBPM : Korea Statistics Business Process Model) 기반으로 시스템을 구축하여 표준화시킨 업무프로세서로 기관 간 통계경험과 전문성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임
  - ※ 나라통계시스템은 통계기획에서 생산, 서비스, 자료보관까지 통계작성 전 과정을 표준화 체계화하여 통계작성기관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범용 통계정보시스템

- 유사 통계자료, 행정자료, 경영공시자료 등을 수집하여 조사자료와 비교검토, 수준점검을 통하여 자료의 일관성, 정합성, 정확성을 제고
  - ※ 조사자료 검증 및 수준분석을 위한 비교자료

- 2012년 전국사업체조사 통계 비교·검토
- 국세청 부가세, 법인세 자료와 비교·검토
- 기업 경영 정보 공시 사이트 및 기관별 홈페이지의 경영 공시자료와 비교·검토

● 2012년 기준조사 스포츠산업 분류 변화 적용 유지

- 국가승인통계 지정 목적에 부합하기 위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산업특수분류」 중 개편된 스포츠산업분류를 적용하여 스포츠산업실태조사를 진행함
- 2012년 기준조사는 3개의 대분류, 20개의 중분류, 65개의 세세분류로 구성됨
  - ※ 전년도와 분류 기준은 동일하나 보다 정확한 스포츠산업 모집단을 구성하기 위하여 스포츠 산업 특수분류 기준으로 각 사업체별 사업내용을 확인하여 갱신한 표본 추출틀을 구성함
- 각 업종별 하위업종에 대한 개념의 정의는 「2013년 스포츠산업 특수분류」에 명시된 부분을 **활용함**

대분류	중분류	세세분류	KSIC	산업분류명
스포츠 시설업	10101 경기장 운영업	1010101 실내 경기장 운영업	91111	실내 경기장 운영업
		1010102 실외 경기장 운영업	91112	실외 경기장 운영업
		1010103 경주장 운영업	91113	경주장 운영업
	10102 참여스포츠 시설 운영업	1010201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91131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1010202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91132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1010203 수영장 운영업	91133	수영장 운영업
		1010204 볼링장 운영업	91134	볼링장 운영업
		1010205 당구장 운영업	91135	당구장 운영업
		1010206 골프연습장 운영업	91136	골프연습장 운영업
		1010207 스포츠 무도장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1010208 체육공원 운영업	91292	체육공원 및 유사 공원 운영업
		1010209 기원 운영업	91293	기원 운영업
		10103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1010301 골프장 운영업	91121
	1010302 스키장 운영업		91122	스키장 운영업
	10104 수상스포츠 시설 운영업	1010401 낚시장 운영업	91231	낚시장 운영업
		1010499 기타 수상스포츠시설 운영업	91239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10199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1019900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91139	그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KSIC	산업분류명		
스포츠 시설업	102 스포츠시설 건설업	스포츠 건설업	1020001 스포츠시설 조정 건설업	41226 조정 건설업		
			1020002 스포츠 토목시설물 건설업	41229 기타 토목시설물 건설업		
스포츠 용품업	20101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	2010101 운동 및 경기용 장비 제조업	33309 기타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 33409 기타 오락용품 제조업		
			2010102 체력단련용 장비 제조업	33301 체조, 육상 및 체력단련용 장비		
			2010103 자전거 제조업	31991 자전거 및 환자용 차량 제조업		
			2010104 낚시 및 수렵용 장비 제조업	33303 낚시 및 수렵용구 제조업		
			2010105 놀이터용 기구 제조업	33302 놀이터용 장비 제조업		
			2010106 스포츠 응원용품업	33999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제품 제조업		
			2010199 기타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	31120 오락 및 스포츠용 보트 건조업 25200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		
			20102 스포츠의류 및 관련 섬유제품 제조업	스포츠의류 및 관련 섬유제품 제조업	2010201 스포츠 의류 제조업	14191 셔츠 및 체육복 제조업
					2010202 캠퍼용 직물제품 제조업	13224 천막 및 기타 캔버스 제품 제조업
					2010203 스포츠 관련 직물제품 제조업	13229 기타 직물제품 제조업
	2010204 스포츠 관련 의류부분품 제조업	14199 그외 기타 봉제의복 제조업				
	20103 스포츠가방 및 신발 제조업	스포츠가방 및 신발 제조업	2010301 스포츠 가방 제조업	15129 가방 및 기타 보호용 케이스 제조업		
			2010302 스포츠 신발 제조업	15219 기타 신발 제조업		
			2010303 스포츠 관련 신발부분품 제조업	15220 신발부분품 제조업		
	20201 운동 및 경기용품 도매업	운동 및 경기용품 도매업	2020101 운동 및 경기용구 도매업	46464 운동 및 경기용품 도매업 46463 장난감 및 취미용품 도매업		
			2020102 자전거 도매업	46465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도매업		
			2020103 스포츠 의류 도매업	46413 셔츠 및 외의 도매업		
			2020104 스포츠 가방 도매업	46491 가방 및 여행용품 도매업		
			2020105 스포츠 신발 도매업	46420 신발 도매업		
	20202 운동 및 경기용품 유통 및 임대업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2020201 운동 및 경기용구 소매업	47631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47640 게임용구, 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		
2020202 자전거 소매업			47632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2020203 스포츠 의류 소매업			47416 셔츠 및 기타 의복 소매업			
2020204 스포츠 가방 소매업			47430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2020205 스포츠 신발 소매업			47420 신발 소매업			
2020206 스포츠 관련 무점포 소매업			스포츠 관련 무점포 소매업	47911 전자상거래업		
				47919 기타 통신 판매업		
				47999 그외 기타 무점포 소매업		
				47993 방문 판매업		
2020300 운동 및 경기용품 임대업			69210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용품 임대업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KSIC	산업분류명
스포츠 서비스업	301 스포츠 경기 서비스업	30101 스포츠 경기업	3010100 스포츠 경기업	91191 스포츠 클럽 운영업
		30102 스포츠 베팅업	3010201 스포츠 복권발행 및 판매업	91241 복권발행 및 판매업
			3010299 기타 스포츠 베팅업	91249 기타 캄블링 및 베팅업
	302 스포츠 정보 서비스업	30201 스포츠 미디어업	3010301 스포츠 에이전트업	73901 매니저업
			3010302 회원권 대행 판매업	73903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
			3010303 스포츠 마케팅 대행업	71531 경영컨설팅업
			3010399 기타 스포츠 마케팅업	91199 그외 기타스포츠 서비스업
			3020101 스포츠 신문 발행업	58121 신문 발행업
			3020102 스포츠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	58122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
			3020103 스포츠 관련 라디오 방송업	60100 라디오 방송업
303 스포츠 교육기관	30300 스포츠 교육기관	3020104 스포츠 관련 지상파 방송업	60210 지상파 방송업	
		3020105 스포츠 관련 프로그램 공급업	60221 프로그램 공급업	
		3020106 스포츠 관련 유선 방송업	60222 유선 방송업	
		3020107 스포츠 관련 위성 및 기타 방송업	60229 위성 및 기타 방송업	
		30299 기타 스포츠 정보 서비스업	3029900 기타 스포츠 정보서비스업	63991 데이터베이스및온라인정보 제공업
		3030001 스포츠 교육기관	85611 스포츠 교육기관	
		3030099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	85612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399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39901 스포츠 게임 개발 및 공급업	3990101 온라인·모바일 스포츠 게임 개발 및 공급업	58211 온라인·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3990199 기타 스포츠 게임 개발 및 공급업	58219 기타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39902 스포츠 여행업	3990200 스포츠 여행업	75211 일반 및 국외 여행사업 75212 국내 여행사업 75290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서비스업	

\* 제외업종(1개 업종) : 11209(기타 비알콜음료 제조업)

## 4 조사내용 및 방법

### 4.1 조사설계

조사 지역	■ 전국
조사 범위	■ 스포츠 활동을 지원하는 시설업, 용품업, 서비스업
표본 (Sample) 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 7,317개 업체</li> <li>- 스포츠 시설업 : 2,845 개</li> <li>- 스포츠 용품업 : 3,164 개</li> <li>- 스포츠 서비스업 : 1,308 개</li> </ul>
조사 내용	■ 사업체 일반현황, 종사자수, 사업의 종류, 사업실적, 스포츠산업 비중, 특성항목, 사업체 경영전망, 설문문항 등(16개 항목)
조사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체를 방문하여 조사하는 면접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방문 조사가 어려운 경우 해당 사업체는 e-mail 조사를 병행 실시</li> <li>■ 응답자의 회신 편의성을 고려한 전화, 이메일, Fax 조사 병행</li> </ul>
조사 기간	■ 2014. 9. 1~10. 22

### 4.2 조사대상

- 본 조사는 조사기준일(2013년 12월 3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하며 스포츠산업을 영위하는 종사자 1인 이상의 사업체를 조사대상으로 함
- 본 조사에 포함되는 스포츠산업은 스포츠 시설업, 스포츠 용품업, 스포츠 서비스업의 3개 산업을 대분류로 한정하여 조사를 진행함
- 스포츠 시설업은 경기장 운영업, 참여스포츠 시설 운영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수상스포츠 시설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스포츠 건설업으로 구분

- 스포츠 용품업은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 스포츠의류 및 관련 섬유제품 제조업, 스포츠 가방 및 신발 제조업, 운동 및 경기용품 도매업,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운동 및 경기용품 임대업으로 구분
- 스포츠 서비스업은 스포츠 경기업, 스포츠 베팅업, 스포츠 마케팅업, 스포츠 미디어업, 기타 스포츠 정보 서비스업, 스포츠 교육기관, 스포츠 게임 개발 및 공급업, 스포츠 여행업으로 구분

<표 I-1> 조사대상

대분류	중분류명	
1. 스포츠 시설업	■ 경기장 운영업	
	■ 참여 스포츠시설 운영업	
	■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 수상 스포츠시설 운영업	
	■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2. 스포츠 용품업	■ 스포츠 건설업	
	■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 (수렵용 공기총, 경기용 총포탄 범선, 요트, 카누, 카약 스포츠용 자전거, 자전거 부품 불량용구, 당구용구 회전목마, 기타 흥행장용품 등)	
	■ 스포츠 의류 및 관련 섬유제품 제조업 (캠핑용 직물제품 구명자켓, 구명벨트스포츠의류 제조 스포츠의류 부분품 등)	
	■ 스포츠 가방 및 신발 제조업 (등산용 배낭 경기용 및 특수용 신발 제조 경기용 운동화 부분품 등)	
	■ 운동 및 경기용품 도매업	
	■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 운동 및 경기용품 임대업	
	3. 스포츠 서비스업	■ 스포츠 경기업
		■ 스포츠 베팅업
		■ 스포츠 마케팅업
■ 스포츠 미디어업		
■ 기타 스포츠 정보 서비스업		
■ 스포츠 교육기관		
■ 스포츠 게임 개발 및 공급업		
■ 스포츠 여행업		

### 4.3 조사단위

- 사업체 단위: 단독사업체, 지사(지점) 등
- 개별 사업체 「(본사(지사 제외), 지사(점), 영업소 등) 별 조사표 작성
  - 본사와 지사가 표본으로 동시에 대상사업체로 선정된 경우 본사를 대상으로 기업체 단위 조사
  - 본사단위: 경마, 경륜, 경정 등 일부 업종

### 4.4 조사절차

구분	주요 업무 내용	관련기관 및 부서
준비단계	조사항목 설정 및 조사표 설계	한국스포츠개발원, ㈜포커스컴퍼니
	표본설계	한국스포츠개발원, ㈜포커스컴퍼니
	실시계획 수립 및 예산 재배정	㈜포커스컴퍼니
	입력·내검을 위한 나라통계 시스템 점검	㈜포커스컴퍼니
	조사지침서 작성 및 조사표류 인쇄	㈜포커스컴퍼니
	조사원 채용	㈜포커스컴퍼니
현장조사	담당자 교육 및 조사원 교육	한국스포츠개발원, ㈜포커스컴퍼니
	준비조사	㈜포커스컴퍼니
	본조사 실시	㈜포커스컴퍼니
	조사표 내검 및 입력	㈜포커스컴퍼니
	조사표 제출	㈜포커스컴퍼니
자료처리 및 집계·제출	조사결과 검토 및 집계	한국스포츠개발원, ㈜포커스컴퍼니
	최종보고서 작성	한국스포츠개발원, ㈜포커스컴퍼니

### 4.5 조사모집단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산업특수분류」 중 스포츠산업분류에 해당하는 사업체로써 포괄범위는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시설업, 용품업, 관련 서비스업으로 한정

#### ● 모집단 정의

- 목표모집단: 한국표준산업분류 「산업특수분류」 중 '스포츠산업분류'에 해당하는 사업체
- 조사모집단: 2012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 자료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 「산업특수분류」 '스포츠산업분류'에 해당하는 사업체
- 표본추출틀: 2012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 자료에서 조사모집단 사업체를 명확히 하고자 해당 업체별 사업 내용을 확인하여 스포츠산업 특수분류 기준으로 갱신한 명부

#### ● 조사모집단 보완

- 2012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 자료에서 스포츠산업 특수 분류 65개 스포츠산업 산업세세분류에 해당하는 사업체의 사업 내용을 확인 과정을 통해 모집단 확정 업체, 모집단 포함 여부 확인 필요업체, 모집단 제외 업체로 분류 함
- 모집단 포함 여부 확인 필요 업체의 경우 모집단 판별 조사, 전년도 조사 결과, 행정자료 매칭등을 통하여 보완 과정을 거침
  - (보완대상) 2012년 전국사업체조사의 사업 내용을 통하여 스포츠산업 영위 여부확인이 필요한 아래 10개 산업세세분류\*에 속한 14,105개 사업체 (1개는 본사조사 대상으로 별도 보완\*\*)
    - \* 1020001, 1020002, 2010106, 2010204, 2010301, 2010303, 2020204, 3990101, 3990200
    - \*\* 1010302
  - (보완방법) 위에 언급한 산업세세분류에 속하는 사업체를 전화조사 및 전년조사와 교차검토, 행정자료 매칭등을 통해 스포츠산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체는 '대상의' 처리하여 보완하고 스포츠산업에 해당하는 사업체 수를 이용하여 최종 모집단을 추정하기 위한 가중치를 계산하여 추정함

### 스포츠산업 모집단 사업체수 추정 및 가중치 계산

- 세세분류 업종별( $h$ ) 층별 스포츠산업 모집단 사업체수( $\hat{N}_h$ )를 다음과 같이 추정

$$\hat{N}_h = \sum_{i=1}^K \left( N_{hi}^S \times \left( \frac{n_{hi}^S - I_{hi}}{n_{hi}^S} \right) \right) + n_h'^C$$

$N_{hi}^S$  : 확정모집단의  $h$ 업종  $i$  층 표본층 전체 사업체 수

$i$  : 표본층 층자 ( $i=1, \dots, K$ )

$n_{hi}^S$  : 설계 당시  $h$ 업종  $i$  층 표본 사업체 수

$n_h'^C$  : 조사 완료된  $h$ 업종 전수층 사업체 수

$I_{hi}$  :  $h$ 업종  $i$  층의 부적격 사업체 수

$\hat{N}_h$  :  $h$ 업종  $i$  층의 스포츠산업을 영위하는 추정 사업체 수

#### ● 모집단 사업체수 추정결과

- 2013년 기준 스포츠산업 모집단 사업체수는 70,617개로 추정(구분류기준)
- 2013년 기준 스포츠산업 모집단 사업체수는 90,493개로 추정(신분류기준)
  - 2012년 기준 스포츠산업실태조사에서 구분류 기준 전체 모집단 사업체를 68,826개로 추정하였고, 2013년 기준 조사에서는 70,617개 사업체로 추정함
  - 2012년 기준조사와 비교분석한 결과 구분류 기준 전체 업체는 1,791개가 늘었으며 특히, 스포츠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의 경우 경우 1,267개가 늘고 운동 경기 용품 유통 임대업은 1,020개 업체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 I-2> 대분류별 사업체수 추정결과

(단위 : 개)

	스포츠산업실태조사 모집단 사업체수 추정결과		
	'12년 기준 조사 추정값(A)	'13년 기준 조사 추정값(B)	(B-A)
전 체	68,826	70,617	1,791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	3,577	2,925	-652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	34,152	34,308	156
운동 및 경기용품 유통 임대업	10,793	11,813	1,020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20,304	21,571	1,267

<표 I-3> 대분류별 모집단 비율(구분류기준)

(단위 : 개, %)

구 분	사업체수	비중
운동 경기용품제조업	2,925	4.1
경기 오락스포츠업	34,308	48.6
운동 경기용품 유통임대업	11,813	16.7
스포츠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21,571	30.5
합 계	70,617	100.0

<표 I-4> 대분류별 모집단 비율(신분류기준)

(단위 : 개, %)

구 분	사업체수	비중
스포츠 시설업	35,314	39.0
스포츠 용품업	31,178	34.5
스포츠 서비스업	24,001	26.5
합 계	90,49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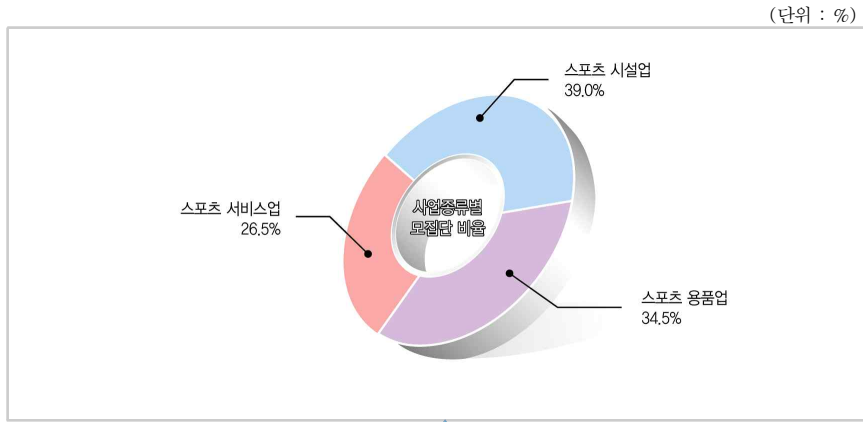


그림 I-1 대분류별 모집단 비율(신분류기준)

<표 I-5> 대분류별 종사자수 비율(구분류기준)

(단위 : 천명, %)

구분	종사자수	비중
운동 경기용품제조업	32	12.1
경기 오락스포츠업	156	59.0
운동 경기용품 유통임대업	35	13.3
스포츠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41	15.6
합계	265	100.0

<표 I-6> 대분류별 종사자수 비율(신분류기준)

(단위 : 천명, %)

구분	종사자수	비중
스포츠 시설업	147	41.4
스포츠 용품업	123	34.6
스포츠 서비스업	85	24.0
합계	355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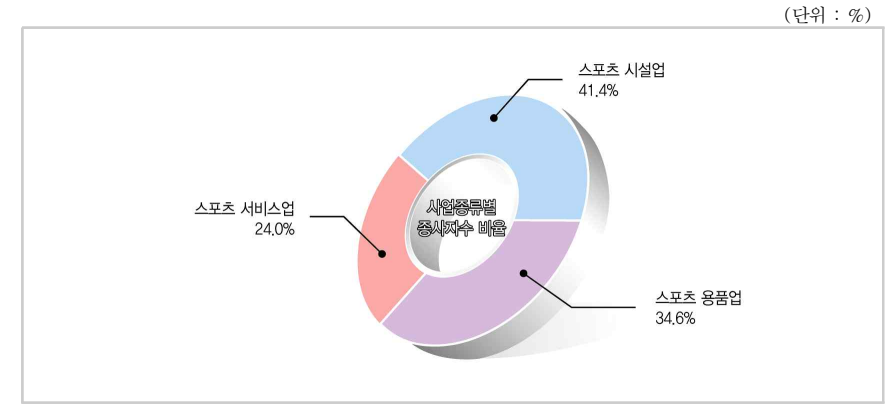


그림 I-2 대분류별 종사자수 비율(신분류기준)

### ● 모집단의 층화

- 공표범위는 65개 세세분류 업종별 주요항목을 공표할 수 있도록 표본규모를 검토
- 층화항목은 65개 세세분류와 적격/적격미상의 조합을 고려한 총 80개의 1차 설계 층의 목표 오차를 주어 표본수 산정층화항목

### ● 층화 방법

- L-H층화법
  - 모집단이 치우친 분포인 경우 적용할 수 있는 응용절사법)과 L-H층화방법) 중 L-H층화법 선택
  - L-H층화 후 부차모집단별로 2~5개의 층으로 나누어진 표본층은 네이만 배분법을 적용해서 표본규모 계산 및 배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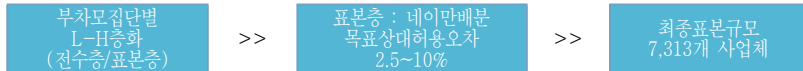
- 1) 주어진 신뢰도와 허용오차를 만족하는 표본수를 가장 작게 하는 절사점을 택한 후 특성변수의 값이 절사점보다 큰 업종은 전수조사를 하고(전수층) 절사점보다 작은 업종은 표본추출을 하여 조사하는 방법(표본층)
- 2) 모집단을 표본층과 전수층으로 나누는 것은 응용절사법과 비슷하지만 주어진 층 수 및 허용오차 하에서 최적의 층경계점을 계산하고 마지막 층은 전수층으로 나머지 층들은 표본층으로 설계하는 방법

## 4.6 표본규모

65개 세세분류 업종으로 부차모집단을 고려하여 실시함

### ● 표본 규모

- 부차모집단별 분포에 따라 L-H층화를 적용하여 전수층과 표본층으로 층화하고, 표본층에 대해서 네이만 배분의 상대허용오차는 2.5~10%로 설정하여 표본규모 계산
  - 상대허용오차는 2012년 기준 조사결과 중분류별 주요항목(스포츠 종사자수, 스포츠 매출액)의 CV를 고려하여 적절한 표본규모가 되도록 설정
- L-H층화하지 않고 전수조사만 할 산업세분류 업종
  - 본사나 지사를 통해 조사되는 다음의 6개 산업세분류 29개 사업체가 전수조사 대상 (1010302, 3020105, 3020106, 3020107, 3990199, 3010201)
- 최종 표본규모는 7,317개 사업체



<표 I-7> 대분류별 표본수 비율 비교(구분류기준)

(단위 : 개, %)

구 분	사업체수	비중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	706	12.4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	2,790	49.0
운동 및 경기용품 유통 임대업	1,261	22.2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933	16.4
합 계	5,690	100.0

<표 I-8> 대분류별 표본수 비율 비교(신분류기준)

(단위 : 개, %)

구 분	사업체수	비중
스포츠 시설업	2,845	38.9
스포츠 용품업	3,164	43.2
스포츠 서비스업	1,308	17.9
합 계	7,317	100.0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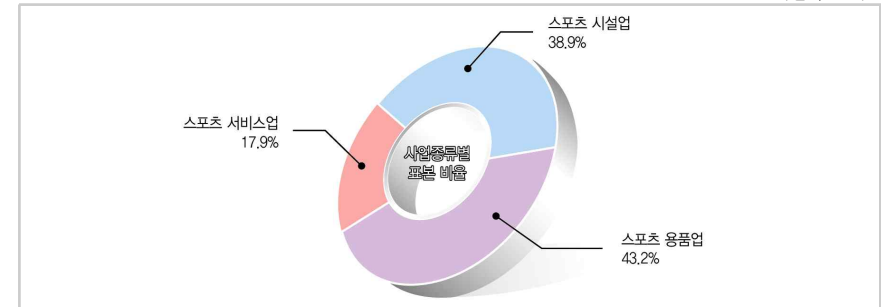


그림 I-3 대분류별 모집단 및 표본 비율(신분류기준)

## 4.7 시장규모 추정

### ● 대분류별 주요항목 총계 추정 결과

- (표본설계) 3개 대분류별 종사자수 총계의 목표CV는 1.7~2.5%로 설계하였고, 조사결과 대분류별 스포츠종사자수 총계의 CV는 1.5~7.1%, 대분류별 스포츠매출액 총계의 CV는 2.4~5.4%
- (추정결과) 스포츠종사자수 총계의 65개 세세분류별 CV는 0.1~8.0%, 스포츠매출액 총계의 CV는 0.1~8.1%로 CV가 5% 보다 큰 일부 업종의 중분류별 공표는 유의해야 함

### 모수추정

#### ■ 전체 스포츠산업 총계 추정식

$$\hat{X} = \sum_h \hat{X}_h$$

#### ■ 65개 세세분류 업종별 총계 추정식

$$\hat{X}_h = X_{hc} + \hat{X}_{hs}$$

$$X_{hc} = \sum_j x_{hj}$$

$$\hat{X}_{hs} = \sum_i \sum_j w_{hi} x_{hij} \quad \text{단, } w_{hi} = \frac{N_{hi}}{n_{hi}}$$

첨자 h : 업종  
c : 전수층  
s : 표본층  
i : 표본층 내의 L-H층  
j : 조사된 기업체

변수 n : 표본수  
N : 모집단수  
 $\hat{X}$  : 특성치 총계  
x : 조사된 기업체의 특성치



## 분산추정

- 전체 스포츠산업 분산 추정식

$$Var(\hat{X}) = \sum_h Var(\hat{X}_h)$$

- 각 업종의 시·도별 분산 추정식

$$Var(\hat{X}_h) = Var(\hat{X}_{hs}) = \sum_i Var(\hat{X}_{hi}) = \sum_i \frac{N_{hi}(N_{hi} - n_{hi})}{n_{hi}} s_{hi}^2$$

$$\text{단, } s_{hi}^2 = \frac{1}{n_{hi} - 1} \left( \sum_j x_{hij}^2 - \frac{(\sum_j x_{hij})^2}{n_{hi}} \right)$$

## 표준오차 및 상대표준오차

- $SE(\hat{X}) = \sqrt{V(\hat{X})}$
- $\hat{CV} = \frac{SE(\hat{X})}{\hat{X}} \times 100$

### 4.8 조사의 한계 및 유용성

#### ● 조사의 한계

- 표본설계의 특성변수는 사업체의 전체 종사자수를 기준으로 하였으나 관심 항목인 스포츠산업 종사자수, 스포츠산업 매출액은 사업체가 응답한 스포츠산업 비중을 이용해 역계산한 것이므로 이에 따른 변동이 반영되어 설계상의 기준 CV에 비해 관심항목의 CV가 다소 높은 경향이 있음
- 현장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조사대상 사업체가 산재되고 표본대체가 많아 조사원의 현장조사에 시간 및 경비가 많이 소요됨
- 현 특수분류(스포츠산업)의 구분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며, 중분류내에 산업분류간 동질성이 부족하여 특성항목별 조사사항에 한계

- 놀이터용 장비 제조업, 회전목마 제조업, 기타 흥행장용품 제조업, 기원 운영업은 포함되나 유원지 운영업, 기타 오락장 운영업 등이 제외되며, 복권발행업, 스포츠 클럽 운영업, 그 외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등은 특성항목인 연간 이용인원 수를 조사할 수 없음
- 스포츠산업 특수분류에 정의되어 있는 세부항목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현장 조사 시 어려움이 있음
  - 스포츠의류, 경기용 신발, 스포츠용 자전거, 흥행장용품 등의 기준, 골프용, 기타 운동용 가방, 스포츠오락용 기계, 바둑 및 장기 등의 포함 여부 등 구분이 곤란
- 조사기준과 기업체 회계기준의 차이에 따라 사업실적이 다르게 작성되어 총량 추정에 변수로 작용하므로 추후 조사 시 조사범위의 명확한 개념 정의가 필요
  - 정부기관 사업을 위탁받은 경우 위탁 수수료를 사업실적으로 조사
    - ※ 부산지방공단 스포윈, 창원경륜공단, 스포츠토트의 경우 각각 부산광역시, 창원시, 체육진흥공단의 위탁사업자로 기업회계에서는 위탁수수료가 사업실적임
- 2013년 기준조사에의 조직형태별 자료는 아래와 같은 한계점을 내포하고 참고사항으로만 활용 가능
  - 표본설계 시 조직형태를 고려하여 표본을 추출하지 않음
  - 표본추출 과다 혹은 과소에 따라 조사결과에 변동이 있어 추정된 값의 정확성이 떨어짐
  - 조사과정에서 표본대체를 함에 있어 스포츠산업 중분류를 감안하여 표본 대체하고 조직형태별은 고려하지 않음

#### ● 2013년 기준조사의 유용성

- 스포츠산업관련 통계의 국가승인통계 유지
  - 통계법 제18조 1항 및 제20조에 의해 승인된 일반통계(승인번호 제11321호)
- 「스포츠산업 특수분류 V. 3」 적용 유지
  - 2013년 기준 스포츠산업실태조사는 2012년 기준 조사시 개편된 스포츠산업 특수분류 체계를 적용하여 스포츠산업을 총 65개 세세분류로 진행(2011년 기준조사까지는 스포츠 산업을 총 45개 세세분류로 구성하여 진행됨)
- 모집단 보완
  - 2012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 자료에서 조사모집단의 포괄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스포츠산업

총 65개 산업세분류 중 10개 산업세분류의 모집단 정비(조사)를 통한 모집단을 보완한 명부 사용

- 2012년 전국사업체조사의 사업 내용을 통하여 스포츠산업 영위 여부확인이 필요한 아래 10개 산업세분류\*에 속한 14,105개 사업체 (1개는 본사조사 대상으로 별도 보완\*\*)
- \* 1020001, 1020002, 2010106, 2010204, 2010301, 2010303, 2020204, 3990101, 3990200
- \*\* 1010302

## ■ 현장조사

- 조사대상 표본수가 전국으로 산재되어 있어 업무량(표본수)이 적은 지역은 조사원 채용에 어려움이 있었음
- 마사회, 경륜장 등 지사(점)별 실적 파악이 어려운 경우 본부(기업체)에서 일괄 조사하는 방법을 병행하여 조사의 정도 및 효율성 제고
- 복권발행 및 판매업, 스키장운영업, 스포츠 관련 프로그램 공급업, 스포츠 관련 유선 방송업, 스포츠관련 위성 및 기타 방송업, 기타 스포츠 게임 개발 및 공급업 등 사업체 개수가 적은 업종은 전수조사 및 본사를 통한 일괄조사를 병행하여 조사의 정도를 제고
- 표본대체를 통한 편향 및 오차 감소와 현장 업무부담 경감을 위하여 당초 표본 추출시 over sampling을 통하여 최소 표본수 확보에 노력

## ■ 조사표

- 단조로운 설문 조사표를 가능한 구체화하여 통계조사 결과에 대한 양적, 질적 분석 확대
- 응답자의 적극적인 협조유도를 위하여 응답자 맞춤형 조사표 설계 및 조사방식을 도입
- 조사표의 일관성 및 항목 간 연계성을 고려한 문항 재구성

## ■ 조사결과 내검 및 자료처리

- 2012년 기준조사와 동일하게 통계청의 나라통계시스템을 이용하여 자료처리 실행

02

스포츠산업체 일반 현황

## 1 사업체 수

### 1.1 모집단 사업체

- 본 조사는 2012년 기준 사업체기초통계조사를 기준으로 추출한 모집단 총 90,493개를 이용하여 조사를 진행함
  - 2011년 기준조사까지는 15개 중분류(45개 세세분류)로 구축된 스포츠산업 특수분류(이하 구분류)로 진행이 되었으며, 2012년 기준조사부터 2개년제 20개 중분류(65개 세세분류)로 새로이 구축된 「스포츠산업 특수분류 v.3」(이하 신분류)적용하여 조사를 진행함
  - 시계열 분석을 위해 구분류체계와 신분류체계로 각각 분석하여 과거자료와 비교분석함
  - 구분류 기준으로는 2012년 기준조사 68,826개보다 1,791개 증가하여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운동 및 경기용품 유통 임대업과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사업체 수는 증가하는 반면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은 감소 추세에 있음

<표 II-1> '11~'13년 대분류별 사업체수 추정결과(구분류 기준)

(단위 : 개)

구분	모집단 사업체수		
	2011년 기준	2012년 기준	2013년 기준
전 체	69,027	68,826	70,617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	4,696	3,577	2,925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	33,576	34,152	34,308
운동 및 경기용품 유통 임대업	10,864	10,793	11,813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19,891	20,304	21,571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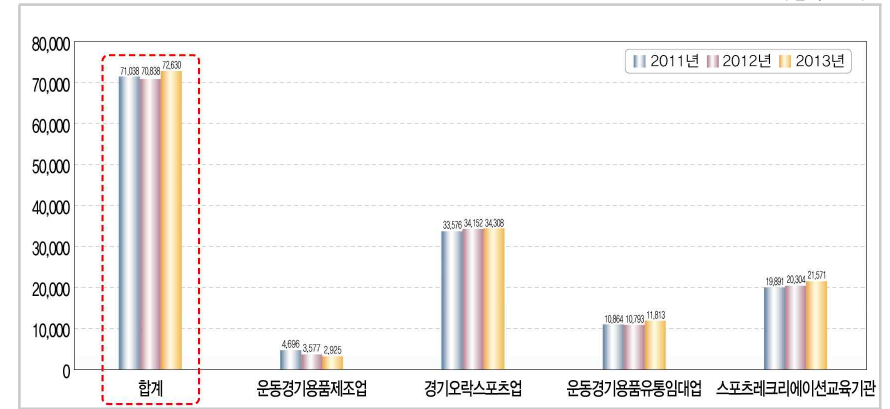


그림 II-1 '11~'13년 기준 모집단수 비교(구분류기준)

<표 II-2> '11~'13년 14개 중분류별 사업체수 현황(구분류 기준)

(단위 : 개, %)

대분류	중분류	2011년		2012년		2013년	
		사업체수	비중	사업체수	비중	사업체수	비중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	기타 비알콜음료 제조업	3	0.0	0	0.0	-	-
	섬유제품 의복	2,898	4.2	1,967	2.9	1,504	2.1
	가방 및 신발	956	1.4	857	1.2	498	0.7
	운동 및 경기용구	839	1.2	753	1.1	923	1.3
경기 및 오락서비스업	경기장운영업	193	0.3	170	0.2	176	0.2
	기타스포츠서비스	441	0.6	416	0.6	656	0.9
	골프장, 스키장	353	0.5	382	0.6	393	0.6
	스포츠시설운영	31,350	45.4	31,959	46.4	31,803	45.0
	수상스포츠시설	1,169	1.7	1,162	1.7	1,197	1.7
	캠블링 및 베팅업	52	0.1	55	0.1	56	0.1
운동 및 경기용품유통업	기타	18	0.0	8	0.0	27	0.0
	도매업	1,260	1.9	1,246	1.8	1,383	2.0
	소매업	8,688	12.6	8,781	12.8	9,594	13.6
스포츠 교육서비스업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용품 임대업	916	1.3	766	1.1	836	1.2
	스포츠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19,891	28.8	20,304	29.5	21,571	30.5
합 계		69,027	100.0	68,826	100.0	70,617	100.0

- 2013년 기준 신분류가 적용된 전체 스포츠산업 사업체수는 총 90,493개로 추정되었으며, 세세분류별로는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스포츠 교육기관이 20.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II-3> '13년 세세분류별 사업체수 추정결과(신분류 기준)

(단위 : 개, %)

구분		모집단 사업체수		
		사업체수	비중	
전 체		90,493	100.0	
스포츠 시설업	경기장 운영업	실내 경기장 운영업	89	0.1
		실외 경기장 운영업	70	0.1
		경주장 운영업	17	0.0
	참여스포츠 시설 운영업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632	0.7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5,517	6.1
		수영장 운영업	234	0.3
		볼링장 운영업	544	0.6
		당구장 운영업	15,133	16.7
		골프연습장 운영업	7,429	8.2
		스포츠 무도장 운영업	200	0.2
		체육공원 운영업	42	0.0
		기원 운영업	1,137	1.3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골프장 운영업	376	0.4
		스키장 운영업	17	0.0
	수상스포츠시설 운영업	낚시장 운영업	674	0.7
		기타 수상스포츠 시설 운영업	523	0.6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2,072	2.3
	스포츠 건설업	스포츠시설 건설업	437	0.5
		스포츠 토목시설물 건설업	171	0.2
		운동 및 경기용 장비 제조업	285	0.3
스포츠 용품업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	체력단련용 장비 제조업	206	0.2
		자전거 제조업	40	0.0
		낚시 및 수렵용 장비 제조업	297	0.3
		놀이터용 기구 제조업	43	0.0
		스포츠 응원용품업	23	0.0
		기타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	29	0.0

구분		모집단 사업체수			
		사업체수	비중		
스포츠 의류 및 관련 섬유제품 제조업	스포츠 의류 제조업	스포츠 의류 제조업	1,219	1.3	
		캠핑용 직물제품 제조업	170	0.2	
		스포츠관련 직물제품 제조업	61	0.1	
		스포츠관련 의류 부분품 제조업	54	0.1	
	스포츠 가방 및 신발 제조업	스포츠 가방 제조업	172	0.2	
		스포츠 신발 제조업	150	0.2	
		스포츠관련 신발부분품 제조업	176	0.2	
		운동 및 경기용품 도매업	운동 및 경기용품 도매업	1,492	1.6
			자전거 도매업	141	0.2
			스포츠 의류 도매업	626	0.7
스포츠 가방 도매업	16		0.0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스포츠 신발 도매업	214	0.2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10,057	11.1	
		자전거 소매업	2,855	3.2	
		스포츠 의류 소매업	9,921	11.0	
		스포츠 가방 소매업	38	0.0	
	스포츠 신발 소매업	1,589	1.8		
	스포츠 관련 무점포 소매업	468	0.5		
	운동 및 경기용품 임대업	운동 및 경기용품 임대업	836	0.9	
	스포츠 경기업	스포츠 경기업	53	0.1	
		스포츠 베팅업	스포츠 복권발행 및 판매업	1	0.0
기타 베팅업	55		0.1		
스포츠 마케팅업	스포츠 에이전트업	27	0.0		
	회원권 대행 판매업	126	0.1		
	스포츠 마케팅 대행업	18	0.0		
	기타스포츠 마케팅업	603	0.7		
스포츠 미디어업	스포츠 신문 발행업	11	0.0		
	스포츠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	39	0.0		
	스포츠 관련 프로그램 공급업	3	0.0		
	스포츠 관련 유선 방송업	2	0.0		
기타 스포츠 정보 서비스업	스포츠 관련 위성 및 기타 방송업	1	0.0		
	기타 스포츠 정보 서비스업	13	0.0		
스포츠 교육기관	스포츠 교육기관	18,905	20.9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	2,666	2.9		
스포츠 게임 개발 및 공급업	온라인·모바일 스포츠 게임 개발 및 공급업	57	0.1		
	기타 스포츠 게임 개발 및 공급업	5	0.0		
스포츠 여행업	스포츠 여행업	1,416	1.6		

- 2013년 신분류가 적용된 20개 중분류별 사업체수는 참여스포츠 시설 운영업이 34.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는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이 27.5%, 스포츠 교육기관이 23.8% 등의 순으로 추정됨

<표 II-4> '13년 20개 중분류별 사업체수 현황(신분류 기준)

(단위: 개, %)

대분류	중분류	2013년	
		사업체수	비중
스포츠 시설업	경기장 운영업	176	0.2
	참여스포츠 시설 운영업	30,868	34.1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393	0.4
	수상스포츠 시설 운영업	1,197	1.3
	기타스포츠 시설 운영업	2,072	2.3
	스포츠건설업	608	0.7
스포츠 용품업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	923	1.0
	스포츠의류 및 관련 섬유제품 제조업	1,504	1.7
	스포츠가방 및 신발 제조업	498	0.6
	운동 및 경기용품 도매업	2,489	2.8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24,928	27.5
	운동 및 경기용품 임대업	836	0.9
스포츠 서비스업	스포츠 경기업	53	0.1
	스포츠 베팅업	56	0.1
	스포츠 마케팅업	774	0.9
	스포츠 미디어업	56	0.1
	기타 스포츠 정보 서비스업	13	0.0
	스포츠 교육기관	21,571	23.8
	스포츠 게임 개발 및 공급업	62	0.1
	스포츠 여행업	1,416	1.6
합 계		90,493	100.0

## 1.2 설립년도

- 스포츠산업 사업체의 설립년도(구분류기준)의 비율을 살펴보면 6~10년 이하의 사업체가 전체 **28.6%**로 2012년 기준조사 23.6%, 21년 이상의 업체가 8.0%로 2012년 기준 조사 6.4% 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기타 다른 설립년도의 비율은 전년대비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스포츠산업 사업체의 설립년도(신분류기준)의 비율을 살펴보면 구분류 기준과 마찬가지로 6~10년 이하 업체와 21년 이상 업체의 비중이 증가함

<표 II-5> '12~'13년 설립년도 비율

(단위: 천개, %)

구분		5년이하	6~10년	11~15년	16~20년	21년 이상	
2012년	구분류	사업체 수	31.4	16.2	10.7	6	4.4
		비중	45.7	23.6	15.6	8.7	6.4
	신분류	사업체 수	37.2	20.6	13.9	7	5.4
		비중	44.2	24.5	16.5	8.3	6.5
2013년	구분류	사업체 수	30.0	20.0	9.5	5.0	5.6
		비중	42.8	28.6	13.5	7.2	8.0
	신분류	사업체 수	37.6	25.6	12.7	6.9	7.1
		비중	41.8	28.5	14.1	7.7	7.9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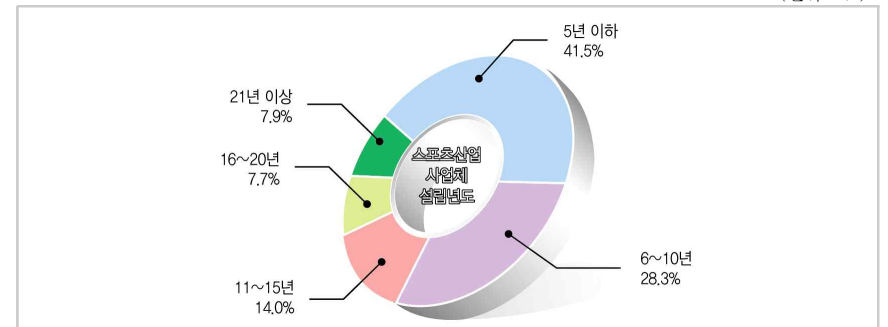


그림 II-2 '13 설립년도 비율 (신분류 기준)

### 1.3 조직형태별 사업체 수

- 구분류기준 조직형태 및 업종별 사업체수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업체가 개인 사업체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중에서도 특히, 개인사업체의 경기 오락스포츠업이 43.3%, 스포츠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이 29.4%로 높게 나타남

<표 II-6> '13년 조직형태 및 업종별 사업체 수(구분류기준)

(단위 : 개, %)

구분	대분류	사업체수	비중
개인사업체	운동 경기용품제조업	2,115	3.0
	경기 오락스포츠업	30,607	43.3
	운동 경기용품 유통임대업	10,395	14.7
	스포츠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20,743	29.4
회사법인	운동 경기용품제조업	808	1.1
	경기 오락스포츠업	1,713	2.4
	운동 경기용품 유통임대업	1,378	2.0
	스포츠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220	0.3
회사이외 법인	운동 경기용품제조업	1	0.0
	경기 오락스포츠업	94	0.1
	운동 경기용품 유통임대업	5	0.0
	스포츠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72	0.1
비법인단체	운동 경기용품제조업	1	0.0
	경기 오락스포츠업	1,331	1.9
	운동 경기용품 유통임대업	18	0.0
	스포츠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493	0.7
국가·지방자치단체	경기 오락스포츠업	562	0.8
	운동 경기용품 유통임대업	17	0.0
	스포츠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43	0.1
합계		70,617	100.0

- 구분류기준의 조직형태별 사업체 수를 살펴보면, 개인사업체가 90.4%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소규모 영세한 업체가 스포츠산업의 다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II-7> 조직형태별 사업체 수(구분류기준)

(단위 : 개, %)

구분	사업체 수	비중
개인사업체	63,860	90.4
회사법인	4,119	5.8
회사이외 법인	173	0.2
비법인단체	1,843	2.6
국가·지방자치단체	623	0.9
합계	70,617	100.0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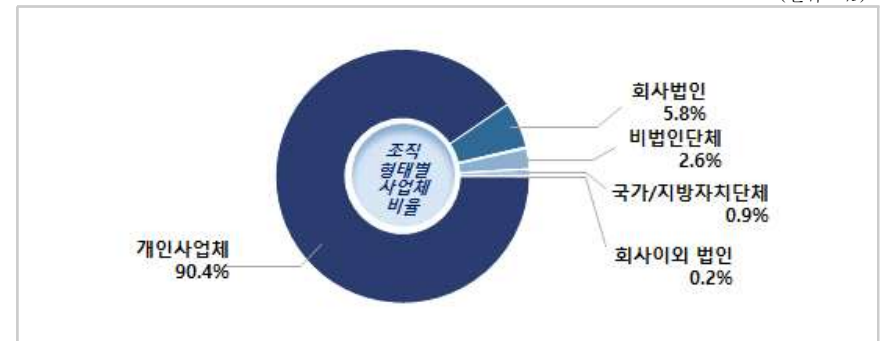


그림 II-3 조직형태별 사업체 비율(구분류기준)

- 신분류 기준으로 조직형태 및 업종별로 사업체 수를 살펴보면, 개인사업체의 스포츠 시설업이 35.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스포츠 용품업 29.1%, 스포츠 서비스업 23.4% 순으로 나타남

<표 II-8> '13년 조직형태 및 업종별 사업체 수(신분류기준)

(단위 : 개, %)

구분	대분류	사업체수	비중
개인사업체	스포츠 시설업	31,847	35.2
	스포츠 용품업	26,305	29.1
	스포츠 서비스업	21,149	23.4
회사법인	스포츠 시설업	2,074	2.3
	스포츠 용품업	4,812	5.3
	스포츠 서비스업	1,630	1.8
회사이외 법인	스포츠 시설업	69	0.1
	스포츠 용품업	7	0.0
	스포츠 서비스업	98	0.1
비법인단체	스포츠 시설업	801	0.9
	스포츠 용품업	36	0.0
	스포츠 서비스업	1,042	1.2
국가·지방자치단체	스포츠 시설업	523	0.6
	스포츠 용품업	17	0.0
	스포츠 서비스업	83	0.1
합계		90,493	100.0

- 신분류기준 조직형태별 사업체 수는 개인사업체가 스포츠산업 전체 사업체의 대부분인 87.6%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회사법인이 9.4%를 점유한 것으로 보아 구분류기준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소규모 영세한 업체가 스포츠산업의 다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II-9> 조직형태별 사업체 수(신분류기준)

(단위 : 개, %)

구분	사업체 수	비중
개인사업체	79,301	87.6
회사법인	8,516	9.4
회사이외 법인	174	0.2
비법인단체	1,879	2.1
국가·지방자치단체	623	0.7
합계	90,493	100.0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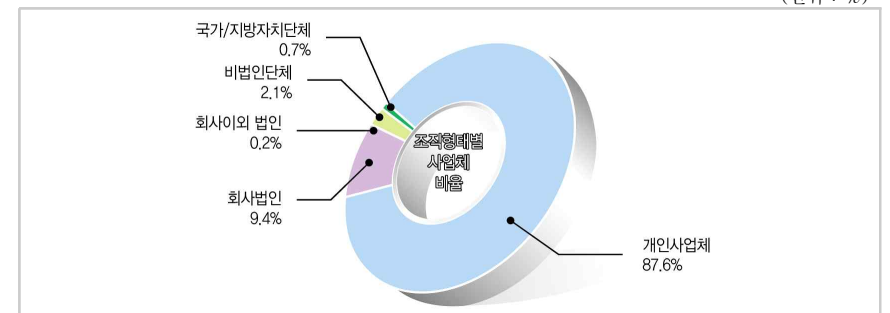


그림 II-4 조직형태별 사업체 비율(신분류기준)



### 1.4 종사자수별 사업체 수

<표 II-10> '11~'13년 종사자 수별 사업체 수(구분류기준)

(단위 : 개, %)

구분	대분류	2011년		2012년		2013년	
		사업체수	비중	사업체수	비중	사업체수	비중
1~4명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	2,450	3.6	1,393	2.0	1,326	1.9
	경기 및 오락서비스업	29,912	43.3	30,440	44.2	29,781	42.2
	운동 및 경기용품유통업	10,040	14.6	9,913	14.4	10,592	15.0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19,441	28.2	19,646	28.6	20,801	29.5
5~9명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	1,306	1.9	1,121	1.6	762	1.1
	경기 및 오락서비스업	1,940	2.8	1,988	2.9	2,470	3.5
	운동 및 경기용품유통업	618	0.9	599	0.9	964	1.4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368	0.5	556	0.8	685	1.0
10~19명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	535	0.8	745	1.1	399	0.6
	경기 및 오락서비스업	771	1.1	832	1.2	1,041	1.5
	운동 및 경기용품유통업	150	0.2	176	0.3	127	0.2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77	0.1	96	0.1	52	0.1
20~49명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	320	0.5	240	0.3	334	0.5
	경기 및 오락서비스업	623	0.9	524	0.8	569	0.8
	운동 및 경기용품유통업	34	0.0	69	0.1	63	0.1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4	0.0	4	0.0	26	0.0
50명 이상	운동·경기용품제조업	84	0.1	78	0.1	104	0.1
	경기·오락서비스업	331	0.5	368	0.5	448	0.6
	운동·경기용품유통업	22	0.0	36	0.1	67	0.1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1	0.0	2	0.0	6	0.0
합 계		69,027	100.0	68,826	100.0	70,617	100.0

- 구분류기준으로는 종사자 수가 1~4인 사업체가 전체 사업체 중 88.5%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율이며, 다음으로 5~9인 사업체가 6.9%로 10인 미만 사업체가 95.4%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반면, 20인 이상 사업체는 단 2.3%에 불과해 대부분의 스포츠산업체는 소규모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됨

<표 II-11> '11~'13년 종사자수별 사업체 수(구분류기준)

(단위 : 개, %)

구분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사업체수	비중	사업체수	비중	사업체수	비중
1~4명	61,843	89.6	61,392	89.2	62,500	88.5
5~9명	4,232	6.1	4,264	6.2	4,881	6.9
10~19명	1,533	2.2	1,849	2.7	1,619	2.3
20~49명	981	1.5	837	1.2	992	1.4
50명 이상	438	0.6	484	0.7	625	0.9
합 계	69,027	100.0	68,826	100.0	70,617	100.0

<표 II-12> '13년 종사자 수별 사업체 수(신분류기준)

(단위 : 개, %)

구분	대분류	사업체수	비중
1~4명	스포츠 시설업	30,854	34.1
	스포츠 용품업	25,965	28.7
	스포츠 서비스업	21,242	23.5
5~9명	스포츠 시설업	2,517	2.8
	스포츠 용품업	3,677	4.1
	스포츠 서비스업	2,052	2.3
10~19명	스포츠 시설업	1,018	1.1
	스포츠 용품업	746	0.8
	스포츠 서비스업	452	0.5
20~49명	스포츠 시설업	546	0.6
	스포츠 용품업	579	0.6
	스포츠 서비스업	139	0.2
50명 이상	스포츠 시설업	379	0.4
	스포츠 용품업	211	0.2
	스포츠 서비스업	116	0.1
합 계		90,493	100.0

- 신분류기준의 종사자 수 또한 1~4인 사업체가 전체 사업체 중 86.3%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율이며, 다음으로 5~9인 사업체가 9.1%로 10인 미만 사업체가 95.4%를 차지하고 있음
  - 20인 이상 사업체는 단 2.2%에 불과해 대부분의 스포츠산업체가 소규모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II-13> 종사자 수별 사업체 수(신분류기준)

(단위 : 개, %)

구 분	사업체수	비중
1~4명	78,061	86.3
5~9명	8,246	9.1
10~19명	2,216	2.4
20~49명	1,264	1.4
50명 이상	706	0.8
합 계	90,493	100.0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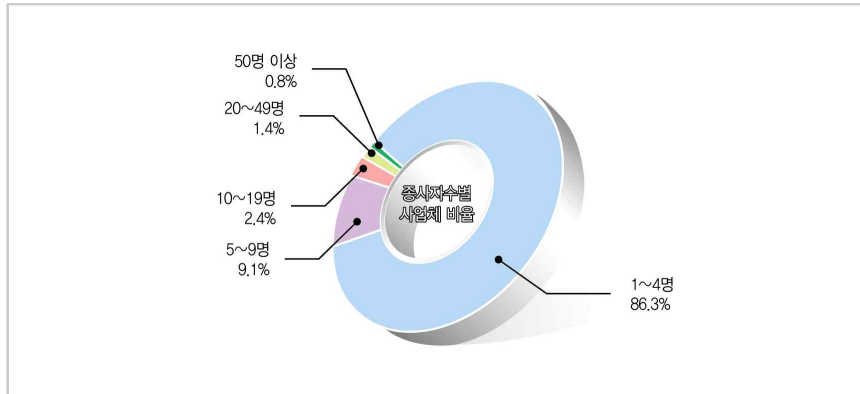


그림 II-5 종사자 수별 사업체 비율

## 1.5 사업종류별 사업체 수

- 구분류기준으로 사업종류별 사업체수는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의 사업체가 전체의 48.6%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냈고, 다음으로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30.5%, 운동 및 경기용품 유통 임대업이 16.7%를 차지하고 있음
  - 업종별 사업체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사업체 수는 전년도보다 다소 증가하였으나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경기 및 오락 스포츠업, 운동 및 경기용품 유통 임대업의 사업체수는 전년도 대비 변동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

<표 II-14> '11~'13년 사업종류별 사업체 수(구분류기준)

(단위 : 개, %)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사업체수	비중	사업체수	비중	사업체수	비중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	4,695	6.8	3,577	5.2	2,925	4.1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	33,577	48.7	34,152	49.6	34,308	48.6
운동 및 경기용품 유통 임대업	10,864	15.7	10,793	15.7	11,813	16.7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19,891	28.8	20,304	29.5	21,571	30.5
합 계	69,027	100.0	68,826	100.0	70,617	100.0

- 신분류기준으로 사업종류별 사업체수는 스포츠 시설업이 전체의 39.0%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냈고, 다음으로 스포츠 용품업은 34.5%, 스포츠 서비스업이 26.5%를 점유하고 있음

<표 II-15> '13년 사업종류별 사업체 수(신분류 기준)

(단위 : 개, %)

구 분	사업체수	비중
스포츠 시설업	35,314	39.0
스포츠 용품업	31,178	34.5
스포츠 서비스업	24,001	26.5
합 계	90,493	100.0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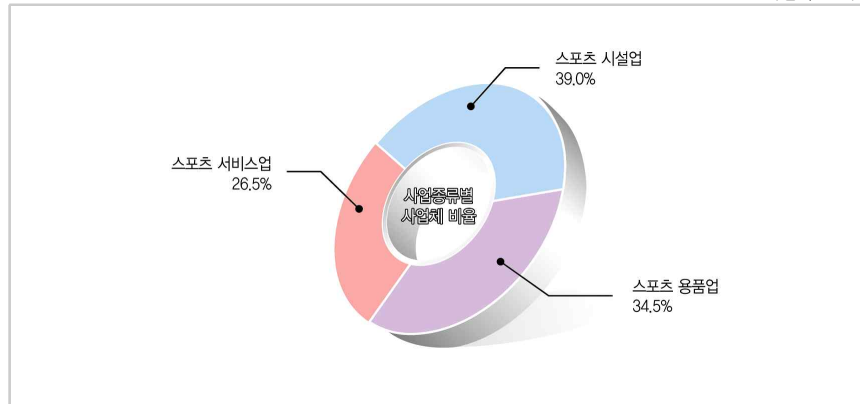


그림 II-6 '13 사업종류별 사업체 비율

## 03 스포츠산업 실태조사 결과

## 1.1 2013년 기준조사 스포츠산업 요약

- 2013년 기준 스포츠산업을 구분류 기준으로 요약하면 스포츠산업 사업체수의 추정 개수는 7만 617개, 스포츠산업 매출액은 40조 769십억 원으로 집계되었으며, 매출액 중 내수가 39조 765십억 원, 수출이 1조 3십억 원으로 각각 조사됨
  - 2013년 기준 스포츠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체는 구분류 기준으로 전년 대비 1,791개가 늘어난 7만 617개로 추정되었음
- 2013년 기준 스포츠산업을 신분류 기준으로 요약하면 스포츠산업 사업체수의 추정 개수는 9만 493개, 스포츠산업 매출액은 61조 853십억 원으로 집계되었으며, 매출액 중 내수가 59조 978십억 원, 수출이 1조 875십억 원으로 각각 조사됨
  - 아울러 신분류 기준의 스포츠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체는 전년대비 6,247개 늘어난 90,493개로 추정됨
- 스포츠산업 종사자수(구분류기준)은 26만 5천명으로 2012년 대비 종사자수가 2만 3천여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분류기준의 종사자수는 35만 5천명으로 2012년 대비 1만 3천여명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 전체 스포츠산업 매출액(구분류기준) 40조 769십억 원 중 영업비용 36조 182십억 원을 제외하면, 영업이익은 4조 587십억으로 11.3%의 이익률을 나타내고 있었고, 신분류기준으로는 매출액 61조 853십억 원 중 영업비용 54조 471십억 원을 제외한 영업이익은 7조 382십억으로 11.9%의 이익률을 나타내고 있음

<표 III-1> '09~'13년 기준 스포츠산업 전체 요약

구분		업체수 (개)	종사자 (천명)	매출액 (십억원)	내수 (십억원)	수출 (십억원)	영업이익 (십억원)
2013년 기준	신분류	90,493	355	61,853	59,978	1,875	7,382
	구분류	70,617	265	40,769	39,765	1,003	4,587
2012년 기준	신분류	84,246	342	57,479	56,309	1,170	4,203
	구분류	68,826	242	38,691	37,688	1,003	3,493
2011년 기준		69,027	236	36,513	35,234	1,279	2,958
2010년 기준		69,315	234	34,482	32,627	1,855	3,930
2009년 기준		62,184	210	33,456	32,575	874	4,994

## 2 매출액

### 2.1 사업종류별 매출액 현황

- 사업종류별 매출액 현황(구분류기준)을 살펴보면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의 매출이 전체 58.5%를 차지하고 있어 스포츠산업 중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운동 및 경기용품 유통·임대업이 22.1%,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이 16.1%,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이 3.3%의 순으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의 매출이 상대적으로 큰 것은 동 업종에 경륜, 경쟁, 경마 및 스포츠복 권 등이 포함되어 있어 이들의 매출액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임
-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의 규모를 추정한 결과 전체의 3.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2년 비중 대비 약 0.2% 증가한 것으로 조사됨

<표 III-2> '11~'13년 스포츠산업 산업분류별 매출액(구분류 기준)

(단위 : 억원, %)

대분류	중분류	2011년		2012년		2013년	
		매출액	비중	매출액	비중	매출액	비중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	기타 비알콜음료 제조업	2,552(3.9)	0.7	-	-	-	-
	섬유제품 및 의복 제조업	40,050(60.1)	11.0	35,844(53.9)	9.2	37,630(57.5)	9.2
	가방 및 신발 제조업	9,603(14.4)	2.6	10,713(16.1)	2.8	11,998(18.3)	2.9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	14,403(21.6)	3.9	19,972(30.0)	5.2	15,827(24.2)	3.9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	경기용품 제조업 합계	66,608(100.0)	(18.2)	66,529(100.0)	(17.2)	65,455(100.0)	(16.1)
경기 및 오락 스포츠업	경기장 운영업	38,043(17.3)	10.4	31,730(13.5)	8.2	33,352(14.0)	8.2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14,913(6.8)	4.1	15,393(6.5)	4.0	16,478(6.9)	4.0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35,667(16.3)	9.8	33,839(14.4)	8.7	48,985(20.5)	12.0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33,309(15.3)	9.1	33,688(14.3)	8.7	45,918(19.2)	11.3
	수상스포츠시설 운영업	751(0.3)	0.2	659(0.3)	0.2	777(0.3)	0.2
	캠핑 및 베딩업	96,300(43.9)	26.4	119,477(50.9)	30.9	92,968(39.0)	22.8
	기타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	291(0.1)	0.1	309(0.1)	0.1	171(0.1)	0.0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 합계	219,274(100.0)	(60.1)	235,095(100.0)	(60.8)	238,649(100.0)	(58.5)
운동 및 경기용품 유통·임대업	운동 및 경기용품 도매업	42,591(60.8)	11.7	43,073(58.7)	11.1	51,024(56.7)	12.5
	운동, 경기용품 및 자전거 소매업	26,781(38.3)	7.3	29,596(40.4)	7.6	37,791(42.0)	9.3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용품 임대업	607(0.9)	0.2	639(0.9)	0.2	1,166(1.3)	0.3
운동 및 경기용품 유통·임대업	운동 및 경기용품 유통·임대업 합계	69,979(100.0)	(19.2)	73,308(100.0)	(18.9)	89,981(100.0)	(22.1)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9,266(100.0)	2.5	11,976(100.0)	3.1	13,603(100.0)	3.3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합계	9,266(100.0)	(2.5)	11,976(100.0)	(3.1)	13,603(100.0)	(3.3)
총 합 계		365,127	100.0	386,908	100.0	407,686	100.0

\* 기타 비알콜음료 제조업의 경우 신분류에서는 제외됨

- 사업종류별 매출액 현황(신분류기준)을 살펴보면 기타 스포츠 베딩업의 매출이 전체 14.6%를 차지하고 있어 스포츠산업 중 가장 큰 규모이며, 다음으로 스포츠 의류 소매업이 11.0%, 운동 및 경기용품 도매업이 8.0%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III-3> '12~'13년 스포츠산업 산업분류별 매출액(신분류 기준)

(단위 : 십억원, %)

구분		2012년		2013년		
		매출액	비중	매출액	비중	
전체		57,479	100.0	61,853	100.0	
스포츠 시설업	경기장 운영업	실내 경기장 운영업	85	0.1	196	0.3
		실외 경기장 운영업	178	0.3	162	0.3
		경주장 운영업	2,910	5.1	2,977	4.8
	참여스포츠 시설 운영업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1,153	2.0	1,007	1.6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525	0.9	898	1.5
		수영장 운영업	132	0.2	216	0.4
		볼링장 운영업	85	0.1	137	0.2
		당구장 운영업	320	0.6	595	1.0
		골프연습장 운영업	932	1.6	1,376	2.2
		스포츠 무도장 운영업	9	0.0	9	0.0
		체육공원 운영업	60	0.1	153	0.2
		기원 운영업	25	0.0	32	0.1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골프장 운영업	2,967	5.2	4,022	6.5
		스키장 운영업	416	0.7	877	1.4
	수상스포츠시설 운영업	낚시장 운영업	25	0.0	27	0.0
		기타 수상스포츠 시설 운영업	40	0.1	51	0.1
	기타스포츠시설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150	0.3	200	0.3
	스포츠 건설업	스포츠시설 건설업	995	1.7	833	1.3
		스포츠 토목시설물 건설업	962	1.7	453	0.7
	스포츠 용품업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	운동 및 경기용 장비 제조업	581	1.0	488
체력단련용 장비 제조업			444	0.8	414	0.7
자전거 제조업			43	0.1	63	0.1
낚시 및 수렵용 장비 제조업			614	1.1	315	0.5
놀이터용 기구 제조업			60	0.1	99	0.2
스포츠 응원용품업			9	0.0	24	0.0
기타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			248	0.4	179	0.3
스포츠 의류 및 관련 섬유제품 제조업		스포츠 의류 제조업	3,159	5.5	3,535	5.7
		캠핑용 직물제품 제조업	328	0.6	95	0.2
		스포츠관련 직물제품 제조업	61	0.1	84	0.1
스포츠 가방 및 신발 제조업		스포츠 관련 의류 부분품 제조업	37	0.1	49	0.1
		스포츠 가방 제조업	220	0.4	165	0.3
		스포츠 신발 제조업	276	0.5	743	1.2
스포츠관련 신발부분품 제조업	576	1.0	291	0.5		

구분		2012년		2013년			
		매출액	비중	매출액	비중		
전체		57,479	100.0	61,853	100.0		
스포츠 용품업	운동 및 경기용품 도매업	운동 및 경기용구 도매업	4,269	7.4	4,968	8.0	
		자전거 도매업	278	0.5	326	0.5	
		스포츠 의류 도매업	2,660	4.6	1,604	2.6	
		스포츠 가방 도매업	41	0.1	88	0.1	
		스포츠 신발 도매업	1,593	2.8	2,163	3.5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운동 및 경기용구 소매업	3,131	5.5	3,653	5.9	
		자전거 소매업	332	0.6	525	0.8	
		스포츠 의류 소매업	5,623	9.8	6,793	11.0	
		스포츠 가방 소매업	19	0.0	77	0.1	
		스포츠 신발 소매업	168	0.3	3,667	5.9	
	스포츠 관련 무점포 소매업	2,403	4.2	576	0.9		
	운동 및 경기용품 임대업	운동 및 경기용품 임대업	64	0.1	117	0.2	
	스포츠 경기업	스포츠 경기업	715	1.2	478	0.8	
		스포츠 베팅업	스포츠 복권발행 및 판매업	189	0.3	252	0.4
			기타 스포츠 베팅업	11,759	20.5	9,045	14.6
스포츠 마케팅업	스포츠 에이전트업	31	0.1	17	0.0		
	회원권 대행 판매업	184	0.3	111	0.2		
	스포츠 마케팅 대행업	15	0.0	7	0.0		
	기타스포츠 마케팅업	825	1.4	1,170	1.9		
스포츠 미디어업	스포츠 신문 발행업	170	0.3	112	0.2		
	스포츠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	23	0.0	14	0.0		
	스포츠 관련 라디오 방송업	-	-	-	-		
	스포츠 관련 지상파 방송업	-	-	-	-		
	스포츠 관련 프로그램 공급업	120	0.2	54	0.1		
	스포츠 관련 유선 방송업	53	0.1	95	0.2		
	스포츠 관련 위성 및 기타 방송업	143	0.2	164	0.3		
	기타 스포츠 정보 서비스업	기타 스포츠 정보 서비스업	38	0.1	8	0.0	
스포츠 교육기관	스포츠 교육기관	1,055	1.8	1,266	2.0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	143	0.2	95	0.2		
스포츠 게임 개발 및 공급업	온라인·모바일 스포츠 게임 개발 및 공급업	1,875	3.3	1,986	3.2		
	기타 스포츠 게임 개발 및 공급업	49	0.1	342	0.6		
스포츠 여행업	스포츠 여행업	886	1.6	1,314	2.1		

- 매출액 비중의 변화(구분류기준)를 보면, 운동 및 경기용품 유통 임대업이 2012년에 비해 22.7% 증가하였으며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13.5%,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 1.5%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반면,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의 경우 1.6% 감소한 것으로 조사됨

<표 III-4> '11~'13년 사업종류별 매출액(구분류기준) (단위 : 십억원, %)

구분	매출액 (비중)			증감률 (2012년 대비)
	2011년	2012년	2013년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	6,661(18.2)	6,653(17.2)	6,545(16.1)	-1.6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	21,927(60.1)	23,509(60.8)	23,865(58.5)	1.5
운동 및 경기용품 유통 임대업	6,998(19.2)	7,331(18.9)	8,998(22.1)	22.7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927(2.5)	1,198(3.1)	1,360(3.3)	13.5
합계	36,513(100.0)	38,691(100.0)	40,769(100.0)	5.4

- 신분류기준으로 매출액 비중은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 운동 및 경기용품 유통 및 임대업을 포함하는 스포츠 용품업이 스포츠산업 매출액의 50.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매출액의 증감률을 살펴보면, 스포츠 시설업의 전년 대비 증감률이 18.8%로 증가 폭이 가장 크게 나타남

<표 III-5> '12~'13년 사업종류별 매출액(신분류기준) (단위 : 십억원, %)

구분	2012년도		2013년도		증감률 (2012년 대비)
	매출액	비중	매출액	비중	
스포츠 시설업	11,973	20.8	14,221	23.0	18.8
스포츠 용품업	27,233	47.4	31,103	50.3	14.2
스포츠 서비스업	18,273	31.8	16,529	26.7	-9.5
합계	57,479	100.0	61,853	100.0	7.6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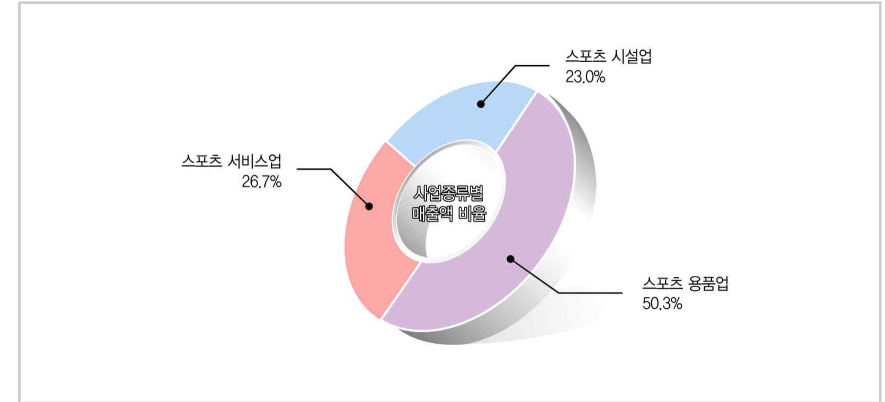


그림 III-1 사업종류별 매출액 비율(2013년)

### 2.2 조직형태별 매출액 현황<sup>3)</sup>

- 조직형태별 매출액(신분류기준)을 살펴보면 회사법인이 54.4%, 개인사업체는 21.9%로 스포츠산업 전체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회사이외 법인의 경우 매출액 비중이 2012년보다 19.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표 III-6> '12~'13년 조직형태별 매출액 (단위 : 십억원, %)

구분	2012년		2013년	
	매출액	비중	매출액	비중
개인사업체	12,143	21.2	13,549	21.9
회사법인	29,386	51.1	33,619	54.4
회사이외 법인	13,782	24.0	2,531	4.1
비법인단체	1,166	2.0	11,610	18.8
국가·지방자치단체	1,002	1.7	545	0.9
합계	57,479	100.0	61,853	100.0

3) 2013년 기준조사의 조직형태별 자료는 표본설계시 조직형태를 고려하지 않은 것을 감안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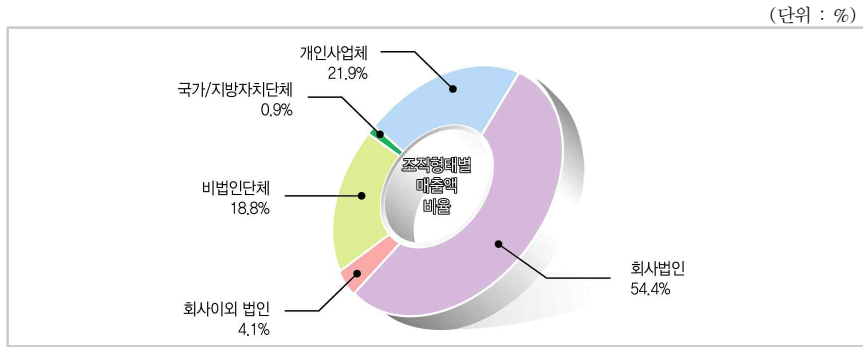


그림 III-2 조직형태별 매출액 비율(2013년)

### 2.3 종사자 규모별 매출액 현황

- 종사자 규모별 매출액(구분류기준) 현황을 살펴보면 50인 이상의 사업체 매출액이 전체의 58.8%를 차지하고 있어 스포츠산업에서 차지하고 있는 중견기업매출의 비중이 상당히 높으며 산업전반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종사자 규모가 1~4인 사업체수가 88.5%(<표 II-11> 참조)를 차지하고 있지만 매출액은 15.3%에 그치고 있어 소규모 업체의 유고발생, 지속적 성장의 한계 등 전년도와 비슷한 문제점들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이는 소규모 사업장의 지속적 성장과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음

<표 III-7> '11~'13년 종사자수별 매출액(구분류 기준)

(단위 : 십억원, %)

구 분	매출액 (비중)			증감률 (2012년 대비)
	2011년	2012년	2013년	
1~4명	5,071(14.0)	6,402(16.5)	6,251(15.3)	-2.4
5~9명	2,468(6.8)	2,720(7.0)	3,233(7.9)	18.9
10~19명	2,592(7.2)	2,997(7.7)	2,598(6.4)	-13.3
20~49명	4,690(13.0)	6,635(17.1)	4,703(11.5)	-29.1
50명 이상	21,692(59.0)	19,937(51.5)	23,984(58.8)	20.3
합 계	36,513(100.0)	38,691(100.0)	40,769(100.0)	5.4

- 종사자 규모별로 매출액(신분류기준) 현황을 살펴보면 50인 이상의 사업체 매출액이 전체의 48.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구분류기준과 마찬가지로 종사자 규모가 1~4인 사업체수가 86.3%(<표 II-13> 참조)를 차지하고 있지만 매출액(신분류기준)은 21.6%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49인 이하인 사업체를 제외한 모든 사업체의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5~9인 이하인 사업체의 매출액 증감률이 41.1%로 높게 나타남

<표 III-8> '12~'13년 종사자수별 매출액(신분류 기준)

(단위 : 십억원, %)

구 분	매출액 (비중)		증감률 (2012년 대비)
	2012년	2013년	
1~4명	11,027(19.2)	13,380(21.6)	21.3
5~9명	4,929(8.6)	6,955(11.2)	41.1
10~19명	4,284(7.5)	4,804(7.8)	12.1
20~49명	8,329(14.5)	6,818(11.0)	-18.1
50명 이상	28,910(50.3)	29,897(48.3)	3.4
합 계	57,479(100.0)	61,853(100.0)	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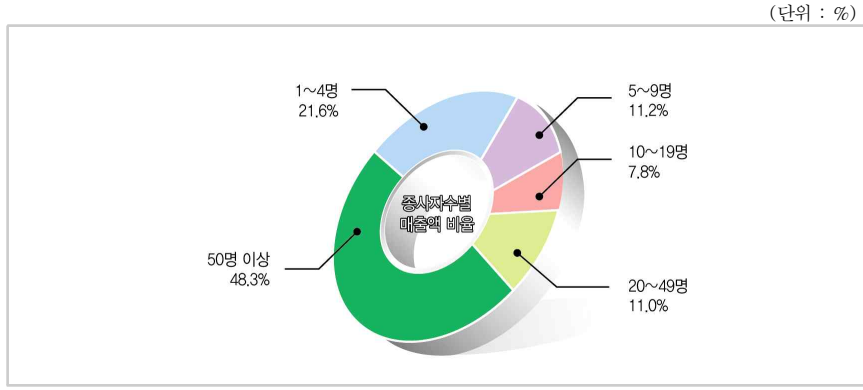


그림 III-3 종사자수별 매출액 비율(신분류 기준)-2013년

## 3 종사자수

### 3.1 사업종류별 종사자 현황

- 사업종류별 종사자 현황(구분류기준)을 살펴보면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의 종사자수의 경우 섬유 제품 및 의복 제조업이 52.2%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됨
- 섬유제품 및 의복 제조업은 구멍자켓, 구멍벨트, 스포츠의류 제조 및 부분품으로 의류 제조 및 부분품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종사자 비율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의 경우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의 종사자 비율이 과반수가 넘는 63.2%로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수영장, 볼링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으로 가장 보편적인 스포츠시설 운영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운동 및 경기용품 유통·임대업은 운동, 경기용품 및 자전거 소매업의 종사자수가 58.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III-9> '11~'13년 스포츠산업 산업분류별 종사자수(구분류 기준)

(단위 : 백명, %)

대분류	중분류	2011년		2012년		2013년	
		종사자수	비율	종사자수	비율	종사자수	비율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	기타 비알콜음료 제조업	9(2.3)	0.4	-	-	-	-
	섬유제품 및 의복 제조업	232(60.4)	9.8	235(62.4)	9.7	167(52.2)	6.3
	가방 및 신발 제조업	72(18.8)	3.1	71(18.8)	2.9	65(20.5)	2.5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	71(18.5)	3.0	71(18.8)	2.9	87(27.3)	3.3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 합계		384(100.0)	16.3	377(100.0)	15.6	320(100.0)	12.1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	경기장 운영업	71(5.4)	3.0	73(5.4)	3.0	55(3.5)	2.1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42(3.2)	1.8	43(3.1)	1.8	77(5.0)	2.9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236(17.8)	10.0	240(17.5)	9.9	323(20.7)	12.2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881(66.3)	37.3	914(66.8)	37.7	987(63.2)	37.3
	수상스포츠시설 운영업	34(2.6)	1.4	35(2.6)	1.4	36(2.3)	1.4
	캠핑 및 배팅업	61(4.6)	2.6	62(4.5)	2.6	82(5.3)	3.1
	기타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	1(0.1)	0.0	1(0.1)	0.0	1(0.1)	0.0

<표 III-9> '11~'13년 스포츠산업 산업분류별 종사자수(구분류 기준) (계속)

(단위 : 백명, %)

대분류	중분류	2011년		2012년		2013년	
		종사자수	비율	종사자수	비율	종사자수	비율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 합계		1,326(100.0)	56.1	1,368(100.0)	56.4	1,562(100.0)	59.0
운동 및 경기용품 유통·임대업	운동 및 경기용품 도매업	76(27.1)	3.2	77(26.4)	3.2	117(33.3)	4.4
	운동, 경기용품 및 자전거 소매업	177(63.3)	7.6	187(64.3)	7.7	206(58.6)	7.8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용품 임대업	27(9.6)	1.1	27(9.3)	1.1	28(8.1)	1.1
운동 및 경기용품 유통·임대업 합계		280(100.0)	11.9	291(100.0)	12.0	352(100.0)	13.3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370(100.0)	15.7	387(100.0)	16.0	413(100.0)	15.6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합계		370(100.0)	15.7	387(100.0)	16.0	413(100.0)	15.6
총 합계		2,360	100.0	2,423	100.0	2,647	100.0

- 구분류기준으로 스포츠산업 종사자수는 26만 5천명으로 전년도 기준 24만 2천명 대비 2

만 3천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 사업종류별 종사자수는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이 15만 6천명으로 59.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서비스업 중심의 사업에 종사자가 집중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의 경우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의 종사자수가 소폭 증가하였으며 기타 다른 업종의 경우 종사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표 III-10> '11~'13년 사업종류별 종사자수(구분류 기준)

(단위 : 천명, %)

구분	종사자수 (비중)			증감률 (2012년 대비)
	2011년	2012년	2013년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	38(16.1)	38(15.6)	32(12.1)	-15.8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	133(56.4)	136(56.4)	156(59.0)	14.7
운동 및 경기용품 유통 임대업	28(11.9)	29(12.0)	35(13.3)	20.7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37(15.6)	39(16.0)	41(15.6)	5.1
합계	236(100.0)	242(100.0)	265(100.0)	9.5

- 신분류기준으로 전체 스포츠산업 종사자수는 총 35만 5천 3백명으로 나타남. 스포츠산업 세세분류별로는 스포츠 교육기관이 3만 6천 6백명으로 전체 산업의 10.3%를 차지하여 가장 많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스포츠 의류소매업이 9.1%를 차지하고 있음

<표 III-11> '12~'13년 스포츠산업 산업분류별 종사자수(신분류 기준)

(단위 : 백명, %)

구분		2012년		2013년		
		종사자수	비중	종사자수	비중	
전체		3,424	100.0	3,553	100.0	
스포츠 시설업	경기장 운영업	실내 경기장 운영업	8	0.2	13	0.4
		실외 경기장 운영업	17	0.5	15	0.4
		경주장 운영업	47	1.4	26	0.7
	참여스포츠 시설 운영업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144	4.2	173	4.9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172	5.0	209	5.9
		수영장 운영업	27	0.8	34	1.0
		볼링장 운영업	53	1.5	24	0.7
		당구장 운영업	263	7.7	225	6.3
		골프연습장 운영업	205	6.0	230	6.5
		스포츠 무도장 운영업	5	0.1	4	0.1
		체육공원 운영업	6	0.2	12	0.3
		기원 운영업	14	0.4	15	0.4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골프장 운영업	178	5.2	243
	스키장 운영업		62	1.8	80	2.3
	수상스포츠시설 운영업	낚시장 운영업	13	0.4	12	0.3
		기타 수상스포츠 시설 운영업	22	0.6	23	0.7
	기타스포츠시설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38	1.1	75	2.1
		스포츠 건설업	스포츠시설 건설업	35	1.0	38
			스포츠 토목시설물 건설업	27	0.8	16
	스포츠 용품업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	운동 및 경기용 장비 제조업	19	0.5	28
체력단련용 장비 제조업			17	0.5	22	0.6
자전거 제조업			1	0.0	3	0.1
낚시 및 수렵용 장비 제조업			26	0.8	25	0.7
놀이터용 기구 제조업			2	0.1	5	0.1
스포츠 응원용품업			1	0.0	2	0.1
기타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	6	0.1	2	0.1		

구분		2012년		2013년		
		종사자수	비중	종사자수	비중	
스포츠 용품업	스포츠 의류 및 관련 섬유제품 제조업	스포츠 의류 제조업	190	5.6	148	4.2
		캠핑용 직물제품 제조업	29	0.8	7	0.2
		스포츠관련 직물제품 제조업	8	0.2	7	0.2
		스포츠관련 의류 부분품 제조업	8	0.2	4	0.1
	스포츠 가방 및 신발 제조업	스포츠 가방 제조업	13	0.4	9	0.2
		스포츠 신발 제조업	20	0.6	37	1.1
		스포츠관련 신발부분품 제조업	38	1.1	19	0.5
	운동 및 경기용품 도매업	운동 및 경기용품 도매업	76	2.3	116	3.3
		자전거 도매업	10	0.3	11	0.3
		스포츠 의류 도매업	62	1.8	38	1.1
		스포츠 가방 도매업	2	0.1	3	0.1
		스포츠 신발 도매업	10	0.3	24	0.7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213	6.3	220	6.2
		자전거 소매업	31	0.9	44	1.2
		스포츠 의류 소매업	370	10.8	322	9.1
		스포츠 가방 소매업	2	0.1	2	0.1
		스포츠 신발 소매업	11	0.3	78	2.2
	운동 및 경기용품 임대업	스포츠 관련 무점포 소매업	37	1.1	24	0.7
운동 및 경기용품 임대업		27	0.8	28	0.8	
스포츠 경기업	스포츠 경기업	9	0.3	14	0.4	
	스포츠 복권발행 및 판매업	3	0.1	3	0.1	
스포츠 베팅업	기타 베팅업	59	1.7	80	2.2	
	스포츠 에이전트업	1	0.0	1	0.0	
스포츠 서비스업	스포츠 마케팅업	회원권 대행 판매업	8	0.2	10	0.3
		스포츠 마케팅 대행업	9	0.3	1	0.0
		기타스포츠 마케팅업	34	1.0	63	1.8
		스포츠 신문 발행업	6	0.2	5	0.1
	스포츠 미디어업	스포츠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	3	0.1	2	0.0
스포츠 관련 라디오 방송업		-	-	-	-	
스포츠 관련 지상파 방송업		-	-	-	-	
스포츠 관련 프로그램 공급업		13	0.4	3	0.1	
스포츠 관련 유선 방송업		1	0.0	1	0.0	
스포츠 서비스업	스포츠 관련 위성 및 기타 방송업	3	0.1	2	0.1	
	기타스포츠 정보서비스업	3	0.1	2	0.1	
	스포츠 교육기관	스포츠 교육기관	339	9.9	366	10.3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	49	1.4	47	1.3
	스포츠 게임 개발 및 공급업	온라인모바일 스포츠게임개발및공급업	54	1.6	63	1.8
기타 스포츠 게임 개발 및 공급업		5	0.1	16	0.4	
스포츠 여행업	스포츠 여행업	260	7.6	173	4.9	

- 사업종류별 종사자 현황(신분류기준)을 살펴보면 경기장 운영업, 참여스포츠 시설 운영업, 골프장 및 스키장, 스포츠 건설업이 포함된 스포츠 시설업이 14만 7천명으로 전체 산업의 41.4%로 가장 크게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종사자수 대비 9.7% 증가된 것으로 나타남

<표 III-12> '12~'13년 사업종류별 종사자수(신분류 기준) (단위 : 천명, %)

구분	2012년		2013년		증감률 (2012년 대비)
	종사자수	비중	종사자수	비중	
스포츠 시설업	134	39.1	147	41.4	9.7
스포츠 용품업	123	36.0	123	34.6	0.0
스포츠 서비스업	85	24.9	85	24.0	0.0
합계	342	100.0	355	100.0	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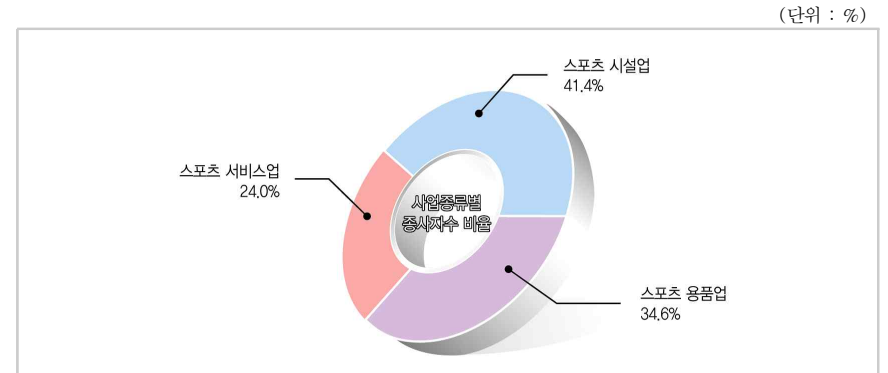


그림 III-4 사업종류별 종사자수 비율(신분류 기준)-2013년

### 3.2 조직형태별 종사자수 현황4)

- 조직형태별 종사자수(신분류기준)를 살펴보면 개인사업체에 종사하는 인원이 17만 7천명으로 전체 49.9%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회사법인이 38.1%, 비법인단체가 8.5% 순으로 조사됨

4) 2013년 기준조사의 조직형태별 자료는 표본설계시 조직형태를 고려하지 않은 것을 감안해야 함

<표 III-13> '12~'13년 조직형태별 종사자수(신분류 기준)

(단위 : 천명, %)

구 분	2012년		2013년	
	종사자수	비중	종사자수	비중
개인사업체	172	50.3	177	49.9
회사법인	139	40.6	135	38.1
회사외 법인	16	4.7	4	1.1
비법인단체	6	1.8	30	8.5
국가·지방자치단체	9	2.6	8	2.4
합 계	342	100.0	355	100.0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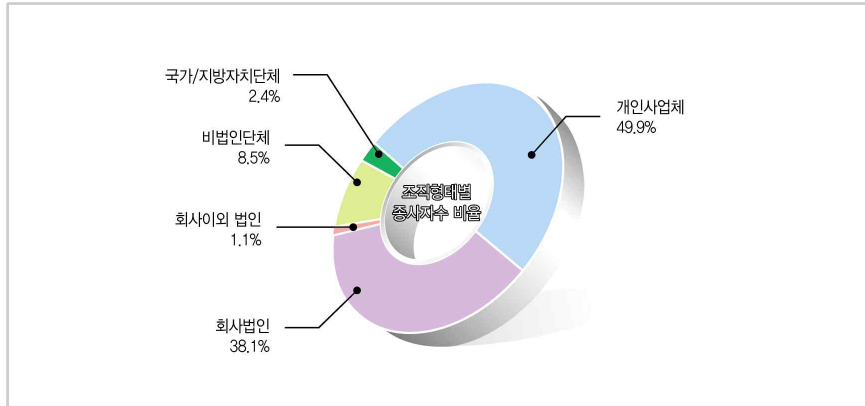


그림 III-5 조직형태별 종사자수 비율(신분류 기준)-2013년

### 3.3 종사자 규모별 종사자수 현황

- 종사자 규모별 종사자수(구분류기준) 현황을 살펴보면 1~4인 사업체수에 종사하는 인원이 전체 종사자의 41.1%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50명 이상 규모의 사업체가 28.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50명 이상 규모의 사업체는 2012년도 대비 종사자수가 27.1% 늘어난 반면 10~19명인 사업체의 종사자 수는 16.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표 III-14> 종사자 수별 종사자(구분류 기준)

(단위 : 천명, %)

구 분	종사자 (비중)			증감률 (2012년 대비)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1~4명	111(47.0)	105(43.4)	109(41.1)	3.8
5~9명	27(11.4)	27(11.2)	31(11.7)	14.8
10~19명	20(8.5)	25(10.3)	21(8.0)	-16.0
20~49명	29(12.3)	26(10.7)	29(11.1)	11.5
50명 이상	49(20.8)	59(24.4)	75(28.2)	27.1
합 계	236(100.0)	242(100.0)	265(100.0)	9.5

- 종사자 규모별 종사자수(신분류기준) 현황을 살펴보면 1~4인 사업체수에 종사하는 인원이 14만 3천명으로 전체 종사자의 40.2%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50명 이상 규모의 사업체에 9만 5천명, 26.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5~9명인 사업체의 종사자수는 2012년 대비 36.8% 늘어난 반면 종업원수가 10~19명인 업체는 9.7%, 50명 이상인 업체는 10.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표 III-15> '12~'13년 종사자수별 종사자(신분류 기준)

(단위 : 천명, %)

구 분	2012년		2013년		증감률 (2012년 대비)
	종사자수	비중	종사자수	비중	
1~4명	134	39.2	143	40.2	6.7
5~9명	38	11.1	52	14.7	36.8
10~19명	31	9.1	28	7.9	-9.7
20~49명	33	9.6	37	10.6	12.1
50명 이상	106	31.0	95	26.7	-10.4
합 계	342	100.0	355	100.0	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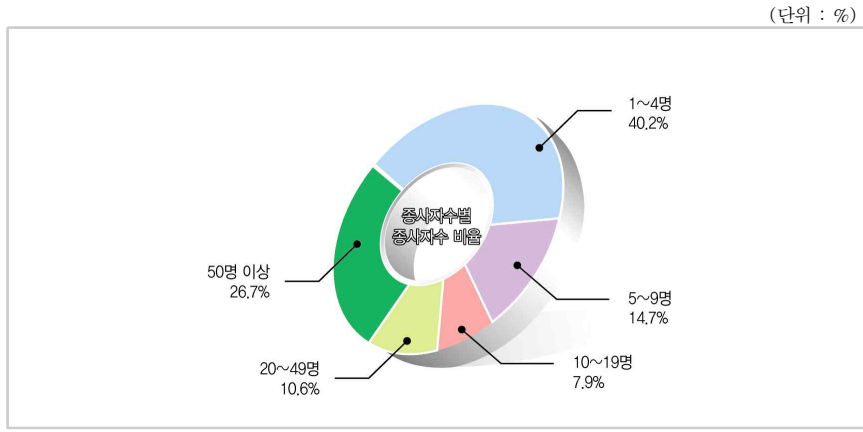


그림 III-6 종사자 수별 종사자수 비율(신분류 기준)-2013년

## 4 사업실적

### 4.1 스포츠산업 전체 실적

- 스포츠산업 매출액(구분류기준)은 40조 769십억 원으로 영업비용 36조 182십억원을 제외하면, 영업이익은 4조 587십억 원으로 11.3%의 이익률을 나타내고 있음
- 스포츠산업 전체 매출액 중 내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97.5%로 내수시장 위주의 산업구조를 지니고는 있음
- 수출경쟁력을 보다 높이기 위해서는 적극적 지원, 투자 등과 동시에 프로스포츠 및 생활스포츠 등 서비스업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전체 스포츠산업 성장의 기회로 활용해야 함

<표 III-16> '12~'13년 스포츠산업 전체실적 및 비중(구분류 기준)

(단위 : 십억원, %)

대분류	중분류	2012년						2013년					
		내수액		영업비용		영업이익		내수액		영업비용		영업이익	
1	기타 비알콜음료 제조업	-	-	-	-	-	-	-	-	-	-	-	-
	섬유제품 및 의복 제조업	3,458	9.2	3,230	9.2	355	10.2	3,638	9.1	3,401	9.4	362	7.9
	가방 및 신발 제조업	798	2.1	958	2.7	113	3.2	1,075	2.7	1,082	3.0	117	2.6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	1,865	4.9	1,716	4.9	281	8.0	1,328	3.3	1,436	4.0	147	3.2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 요약		<b>6,121</b>	<b>16.2</b>	<b>5,904</b>	<b>16.8</b>	<b>749</b>	<b>21.4</b>	6,040	15.2	5,920	16.4	626	13.6
2	경기장 운영업	3,173	8.4	2,968	8.4	205	5.9	3,335	8.4	3,145	8.7	190	4.1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1,539	4.1	1,481	4.2	58	1.7	1,648	4.1	1,577	4.4	71	1.6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3,384	9.0	3,150	8.9	234	6.7	4,898	12.3	4,325	12.0	573	12.5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3,331	8.8	2,803	8.0	566	16.2	4,581	11.5	3,672	10.1	920	20.1
	수상스포츠시설 운영업	66	0.2	51	0.1	14	0.4	78	0.2	52	0.1	26	0.6
	캠핑 및 베틀업	11,948	31.7	11,162	31.7	786	22.5	9,297	23.4	8,641	23.9	655	14.3
	기타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	31	0.1	28	0.1	3	0.1	17	0.0	14	0.0	3	0.1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 요약		<b>23,472</b>	<b>62.3</b>	<b>21,643</b>	<b>61.4</b>	<b>1,866</b>	<b>53.5</b>	23,854	60.0	21,427	59.2	2,438	53.2
3	운동 및 경기용품 도매업	3,873	10.3	3,929	11.2	378	10.8	4,869	12.2	4,644	12.8	458	10.0
	운동, 경기용품 및 자전거 소매업	2,960	7.9	2,637	7.5	323	9.2	3,529	8.9	3,196	8.8	583	12.7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용품임대업	64	0.2	55	0.2	9	0.3	113	0.3	99	0.3	18	0.4
운동 및 경기용품 유통·임대업 요약		<b>6,897</b>	<b>18.4</b>	<b>6,621</b>	<b>18.9</b>	<b>710</b>	<b>20.3</b>	8,511	21.4	7,938	21.9	1,060	23.1
4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1,198	3.2	1,030	2.9	168	4.8	1,360	3.4	897	2.5	463	10.1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요약	1,198	3.2	1,030	2.9	168	4.8	1,360	3.4	897	2.5	463	10.1
총 합계		37,688	100.0	35,198	100.0	3,493	100.0	39,765	100.0	36,182	100.0	4,587	100.0

1 :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 2 :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 3 : 운동 및 경기용품 유통·임대업,  
4 :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 기타 비알콜음료 제조업 제외

- 스포츠산업 매출액(신분류기준)은 61조 853십억원으로 영업비용 54조 471십억원을 제외하면, 영업이익은 7조 382십억원으로 11.9%의 이익률을 나타내고 있음
  - 스포츠산업 전체 매출액 중 내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97.0%로 내수시장 위주의 산업구조를 지니고 있음

<표 III-17> '12~'13년 20개 중분류별 실적 현황(신분류기준)

(단위 : 십억원, %)

대분류	중분류	2012년						2013년					
		매출액		영업비용		영업이익		매출액		영업비용		영업이익	
스포츠 시설업	경기장 운영업	3,173	5.6	2,968	5.6	205	4.9	3,335	5.6	3,145	5.8	190	2.6
	참여스포츠 시설 운영업	3,206	5.7	2,736	5.1	507	12.1	4,413	7.4	3,518	6.5	905	12.3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3,384	6.0	3,150	5.9	234	5.6	4,898	8.2	4,325	7.9	573	7.8
	수상스포츠 시설 운영업	66	0.1	51	0.1	14	0.3	78	0.1	52	0.1	26	0.3
	기타스포츠 시설 운영업	150	0.3	82	0.2	68	1.6	200	0.3	179	0.3	21	0.3
	스포츠 건설업	1,957	3.5	1,849	3.5	108	2.6	1,257	2.1	946	1.7	340	4.6
스포츠 용품업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	1,865	3.3	1,716	3.2	281	6.7	1,328	2.2	1,436	2.6	147	2.0
	스포츠의류 및 관련 섬유제품 제조업	3,458	6.1	3,231	6.1	355	8.4	3,638	6.1	3,401	6.2	362	4.9
	스포츠가방 및 신발 제조업	798	1.4	958	1.8	113	2.7	1,075	1.8	1,082	2.0	117	1.6
	운동 및 경기용품 도매업	8,252	14.7	8,016	15.0	826	19.6	8,436	14.1	8,463	15.5	687	9.3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11,669	20.7	11,182	21.0	492	11.7	14,686	24.5	12,723	23.4	2,568	34.8
	운동 및 경기용품 임대업	64	0.1	55	0.1	9	0.2	113	0.2	99	0.2	18	0.2
스포츠 서비스업	스포츠 경기업	715	1.3	688	1.3	27	0.6	478	0.8	543	1.0	-64	-0.9
	스포츠 베팅업	11,948	21.2	11,162	21.0	786	18.7	9,297	15.5	8,641	15.9	655	8.9
	스포츠 마케팅업	1,055	1.9	1,027	1.9	28	0.7	1,305	2.2	1,156	2.1	149	2.0
	스포츠 미디어업	509	0.9	517	1.0	-8	-0.2	431	0.7	419	0.8	20	0.3
	기타스포츠 정보 서비스업	38	0.1	31	0.1	7	0.2	8	0.0	6	0.0	2	0.0
	스포츠 교육기관	1,198	2.1	1,030	1.9	168	4.0	1,360	2.3	897	1.6	463	6.3
	스포츠 게임 개발 및 공급업	1,918	3.4	2,008	3.7	-84	-2.0	2,327	3.9	2,365	4.3	-38	-0.5
	스포츠 여행업	886	1.6	819	1.5	67	1.6	1,314	2.2	1,073	2.0	241	3.3
	합 계	56,309	100.0	53,276	100.0	4,203	100.0	59,978	100.0	54,471	100.0	7,382	100.0

- 스포츠산업 사업실적(구분류기준)은 2012년 대비 매출액 규모는 5.4% 증가하였고, 수출의 규모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31.3%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신분류 기준의 전년 대비 증감률은 매출액이 7.6%로 나타난 반면, 수출 60.3%, 영업이익 75.6%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 III-18> '09~'13년 스포츠산업 사업실적

(단위 : 십억원, %)

구분	매출액 (A)	내수	수출	영업비용	영업이익 (B)	이익률 (B)/(A)	
							2009년도
2010년도	34,482	32,627	1,855	29,637	3,930	11.4	
2011년도	36,513	35,234	1,279	33,195	2,958	8.1	
2012년도	구분류	38,691	37,688	1,003	35,198	3,493	9.0
	신분류	57,479	56,309	1,170	53,276	4,203	7.3
2013년도	구분류	40,769	39,765	1,003	36,182	4,587	11.3
	신분류	61,853	59,978	1,875	54,471	7,382	11.9
전년대비 증감률	구분류	5.4	5.5	0.0	2.8	31.3	5.8
	신분류	7.6	6.5	60.3	2.2	75.6	9.9

- 스포츠산업 사업실적(신분류기준)은 수출이 1조 875십억원으로 매출액의 3.0%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이익률은 11.9%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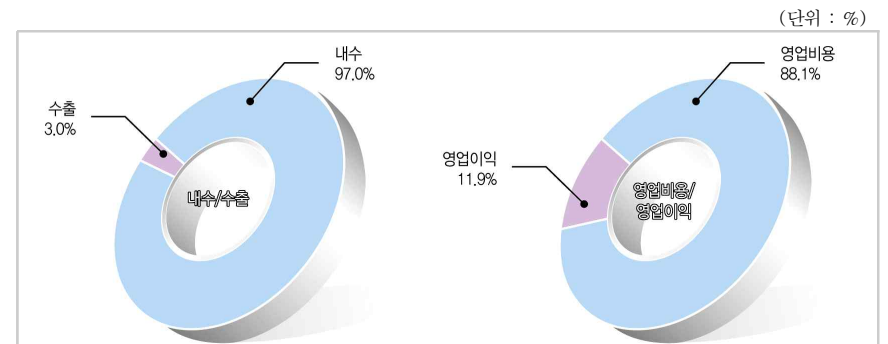


그림 III-7 스포츠산업 사업실적 비율(신분류 기준)-2013년

### 4.2 사업종류별 내수·수출실적

- 전체 스포츠산업 매출액(구분류기준) 중 내수비율은 97.5%에 이르며, 특히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의 경우 2012년 기준과 동일하게 10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경기 및 오락 스포츠 업, 운동 및 경기용품 유통 임대업, 스포츠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의 매출은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나, 운동 및 경기 용품제조업의 경우 매출액이 전년 대비 감소하여 이에 대한 정부지원의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표 III-19> '11~'13년 사업종류별 내수·수출실적(구분류 기준) (단위 : 십억원)

구 분	매출액 (A)			내수			수출		
	2011년	2012년	2013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1년	2012년	2013년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	6,661	6,653	6,545	5,616	6,122	6,040	1,045	531	505
경기 및 오락 스포츠업	21,927	23,509	23,865	21,922	23,472	23,854	5	37	11
운동 및 경기용품 유통 임대업	6,998	7,331	8,998	6,769	6,897	8,511	229	434	487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927	1,198	1,360	927	1,198	1,360	-	-	-

- 전체 스포츠산업 매출액(신분류기준) 중 내수비율은 97.0%에 이르며 특히, 스포츠 시설업과 스포츠 서비스업의 경우 각각 99.72%, 99.95%로 내수 위주의 매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스포츠 시설업과 스포츠 용품업의 경우 전년 대비 매출이 증가하였으나 스포츠 서비스업의 매출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표 III-20> '12~'13년 사업종류별 내수·수출실적(신분류 기준) (단위 : 십억원)

구 분	매출액		내수		수출	
	2012년	2013년	2012년	2013년	2012년	2013년
스포츠 시설업	11,973	14,221	11,936	14,182	37	39
스포츠 용품업	27,233	31,103	26,106	29,276	1,127	1,827
스포츠 서비스업	18,273	16,529	18,267	16,521	6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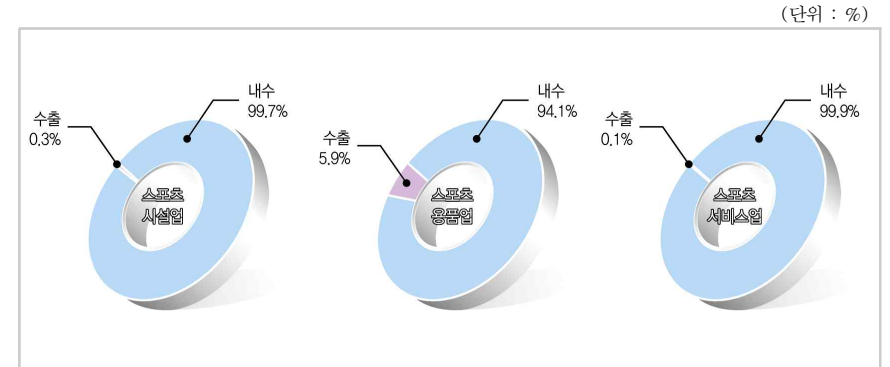


그림 III-8 사업종류별 내수/수출 실적 비율(신분류 기준)-2013년

### 4.3 사업종류별 영업실적

- 스포츠산업의 사업종류별 영업실적(구분류기준)을 살펴보면 전체매출 40조 769십억원 (<표 III-18> 참조)중 영업이익은 4조 587십억원으로 11.3%의 이익률을 나타내고 있음
  -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의 매출액 중 영업이익률이 34.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운동 및 경기용품 유통 및 임대업이 11.8%로 그 뒤를 따름
  -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의 경우 전년도에 이어서 매출이 감소하고 있으며, 타 제조업에 비해 수출경쟁력도 떨어져 브랜드, 품질 등 현안 파악을 통해 문제점을 인식하고 경쟁력 향상을 통한 해외시장 개척이 시급함

<표 III-21> '12~'13년 사업종류별 영업이익률(구분류기준) (단위 : 십억원, %)

구분	매출액 (A)		영업비용		영업이익 (B)		이익률 (B)/(A)	
	2012년	2013년	2012년	2013년	2012년	2013년	2012년	2013년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	6,653	6,545	5,904	5,920	749	626	11.3	9.6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	23,509	23,865	21,642	21,427	1,867	2,438	7.9	10.2
운동 및 경기용품 유통 및 임대업	7,331	8,998	6,622	7,938	709	1,060	9.7	11.8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1,198	1,360	1,030	897	168	463	14.0	34.0

- 스포츠산업의 사업종류별 영업실적(신분류기준)을 살펴보면 전체매출 61조 853십억 원 중 영업이익은 7조 382십억 원으로 11.9%의 이익률을 나타내고 있음
  - 스포츠 시설업의 매출액 중 영업이익률이 14.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스포츠 용품업이 12.5%로 그 뒤를 따르는 것으로 조사됨

<표 III-22> '12~'13년 신분류기준 사업종류별 영업이익률(신분류기준) (단위 : 십억원, %)

구분	매출액 (A)		영업비용		영업이익 (B)		이익률 (B)/(A)	
	2012년	2013년	2012년	2013년	2012년	2013년	2012년	2013년
스포츠 시설업	11,973	14,221	10,836	12,166	1,137	2,055	9.5	14.5
스포츠 용품업	27,233	31,103	25,158	27,204	2,075	3,899	7.6	12.5
스포츠 서비스업	18,273	16,529	17,282	15,101	991	1,428	5.4	8.6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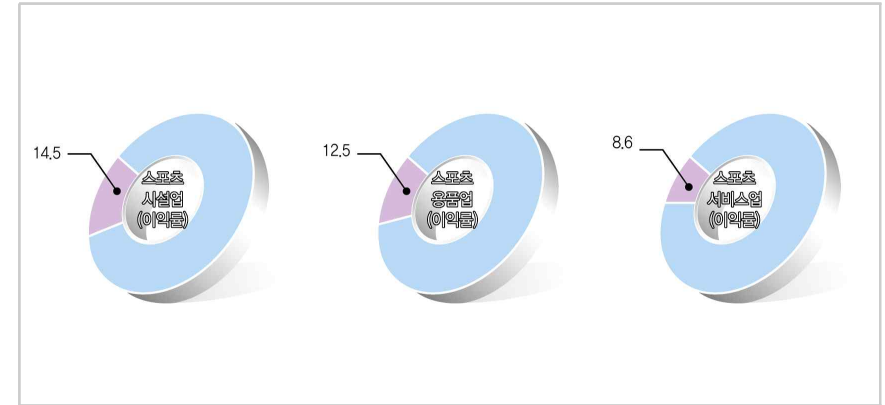


그림 III-9 사업종류별 영업 이익률(신분류기준)-2013년



## 5 인력충원 및 사업체 경영전망

### 5.1 사업종류별 인력충원 현황

- 사업종류별 인력충원 현황(신분류기준)은 스포츠 용품업에서는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스포츠 시설업은 감소, 스포츠 서비스업은 인력충원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표 III-23> 사업종류별 인력충원(신분류기준)

(단위 : 백명)

구 분		인력충원*	
		2013년	2014년
합 계		123	125
사업종류	스포츠 시설업	62	60
	스포츠 용품업	44	48
	스포츠 서비스업	17	17

\*인력충원 : 해당년도에 신규 또는 보충된 상용종사자의 수(퇴직자 결원 보충 포함)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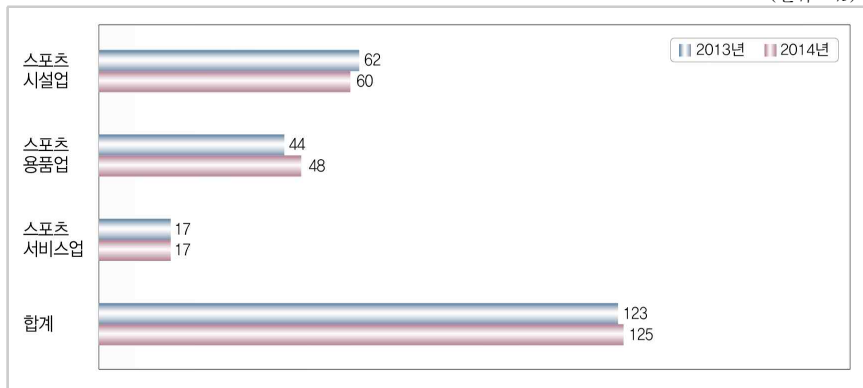


그림 III-10 사업종류별 인력충원

### 5.2 사업종류별 경기전망

- 사업종류별 경기전망(신분류기준)을 살펴보면 2013년에 8.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2014년에는 16.4% 감소하여 전년 대비 경기전망을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음
  - 모든 사업종류별로 전년 경기가 어려울 것 예상하였고 특히, 스포츠 시설업의 경우 전년 대비 11.4% 감소하여 감소 폭이 크게 나타났으며, 2014년 경기전망 또한 -17.9%로 나타나 경기의 불황을 예상하고 있음
  - 따라서, 경기부양을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표 III-24> 사업종류별 경기전망(신분류기준)

(단위 : %)

구 분		사업체 경기전망	
		2013년	2014년
합 계		-8.9	-16.4
사업종류	스포츠 시설업	-11.4	-17.9
	스포츠 용품업	-8.0	-17.9
	스포츠 서비스업	-6.5	-12.2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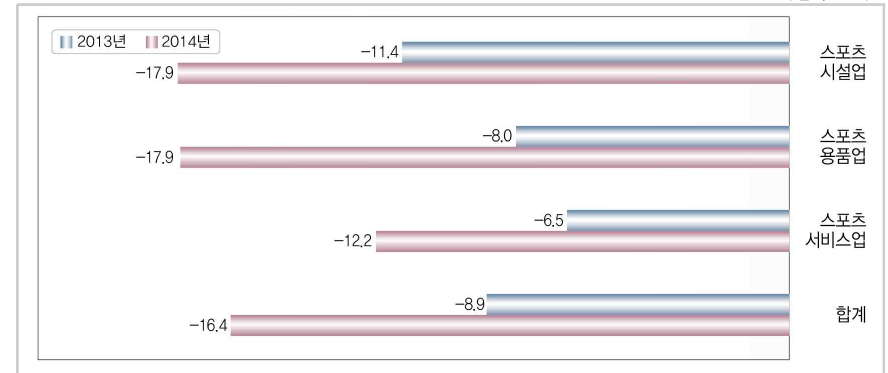


그림 III-11 사업종류별 경기전망

## 6 특성항목

### 6.1 스포츠 용품업 내수 및 수입액 현황

- 운동 및 경기 용품 유통·임대업(구분류기준)의 내수판매 매출은 8조 778십억으로 매출의 비중이 88.7%를 차지하여 여전히 내수 판매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각 품목별 비중을 살펴보면 기타(스키, 골프, 낚시, 캠핑용 장비, 자전거 등)의 내수(매출) 비중이 57.3%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이는 여가활동의 증가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 공류의 경우 내수비중이 6.7%를 차지하고 있고, 수입은 10.9%로 내수 제품 보다는 수입 제품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III-25> '11~'13년 운동 및 경기 용품유통 임대업 상품별 구성비(구분류기준)  
(단위 : 십억원, %)

구분	금액	비중						
		스포츠음료	스포츠의류	스포츠신발	공류	라켓류	기타	
2011년	내수	6,769	0.2	38.1	19.7	5.2	3.3	33.5
	수입	1,103	-	27.2	26.4	3.6	2.4	40.4
2012년	내수	6,897	-	17.5	8.8	4.6	4.7	64.4
	수입	665	-	16.0	6.3	5.0	12.6	60.1
2013년	내수	8,778	0.1	19.4	10.1	6.7	6.4	57.3
	수입	1,115	0.0	10.9	9.3	10.9	7.2	61.6

- 스포츠용품업(신분류기준)의 내수판매 매출은 29조 672십억으로 비중이 94.5%를 차지하여 여전히 내수판매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각 품목별 비중을 살펴보면 기타(스키, 골프, 낚시, 캠핑용 장비, 자전거 등)의 내수(매출) 비중이 42.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스포츠 의류가 36.3%로 나타남

<표 III-26> '12~'13년 스포츠 용품업 상품별 구성비(신분류기준)

(단위 : 십억원, %)

구분	금액	비중						
		스포츠음료	스포츠의류	스포츠신발	공류	라켓류	기타	
2012년	내수	26,105	-	36.1	10.2	2.1	2.2	49.4
	수입	948	-	16.2	8.3	4.5	10.1	60.9
2013년	내수	29,672	0.1	36.3	15.8	3.1	2.7	42.0
	수입	1,730	0.0	18.3	12.0	6.4	4.1	59.3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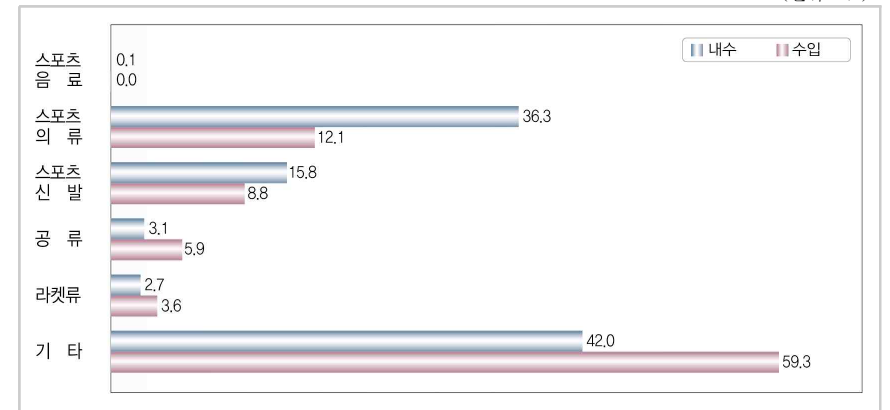


그림 III-12 운동·경기용품제조업 상품별 구성비

### 6.2 스포츠시설업 연간 영업개월 및 이용인원

- 스포츠시설업(구분류기준)의 평균 영업 개월 수는 12개월로 작년보다 다소 늘어났으며, 연간 이용 인원 수는 5억 6,283만여명으로 조사됨
  -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경기장 운영업의 연간 이용 인원수는 대폭 증가한 반면, 수상 스포츠 시설 운영업의 경우 전년대비 이용 인원수가 대폭 감소함

<표 III-27> 스포츠 시설업 연간 영업개월수 및 이용인원(구분류기준)

구분	평균 영업개월수(월)			연간이용인원수(천명, %)			증감률 (%)
	2011년	2012년	2013년	2011년	2012년	2013년	
합계	11	11	12	549,833(100.0)	548,298(100.0)	562,832(100.0)	2.7
경기장 운영업	12	12	12	32,997(6.0)	35,138(6.4)	47,727(8.5)	35.8
골프장 운영업	11	11	12	40,182(7.3)	42,622(7.8)	39,851(7.1)	-6.5
스키장 운영업	6	6	6	9,943(1.8)	10,393(1.9)	10,535(1.9)	1.4
기타스포츠시설 운영업	11	11	12	435,133(79.1)	453,643(82.7)	459,853(81.7)	1.4
수상스포츠시설 운영업	8	8	8	6,941(1.3)	6,503(1.2)	4,866(0.9)	-25.2
캠핑 및 베딩업	12	-	-	24,637(4.5)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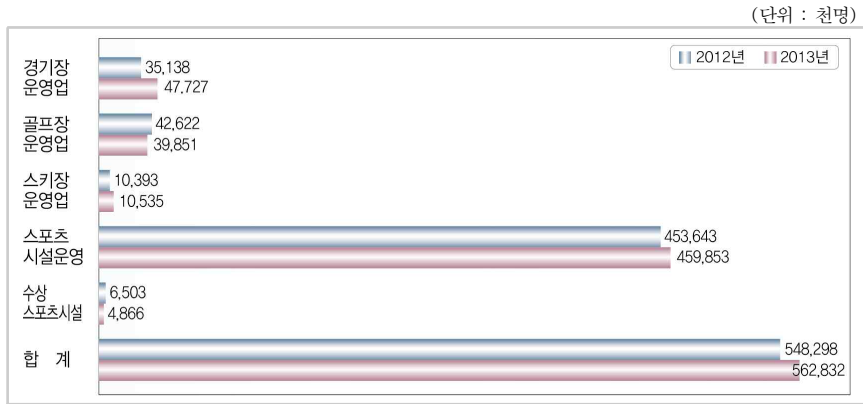


그림 III-13 스포츠 시설업 연간 이용객 비교

### 6.3 스포츠서비스업 고객유형별 매출액 구성비

- 스포츠서비스업(구분류기준)의 경우 8~13세를 대상으로 하는 스포츠서비스업의 매출이 전체 절반인 50.2%를 차지함
  - 태권도, 수영 등 유아체육의 활성화에 따른 결과로 판단되며 그 외 연령대 매출은

4.7%~14.9% 사이로 조사됨

- 이는 스포츠산업 교육서비스업이 청소년, 성인을 위한 프로그램, 콘텐츠 등이 부족하여 8~13세 연령대에 매출이 집중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다양한 교육서비스 콘텐츠를 개발 제공하므로 각 연령대별 잠재 수요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표 III-28> 고객유형별 매출액 비중(구분류기준)

(단위 : %)

구분	7세 이하	8~13세	14~19세	20~39세	40~59세	60세 이상
2010년	6.7	49.0	12.3	9.4	16.6	6.1
2011년	12.0	54.4	17.6	7.5	7.1	1.4
2012년	6.3	34.6	7.8	23.1	20.5	7.7
2013년	8.2	50.2	14.9	11.0	11.1	4.7

- 스포츠서비스업(신분류기준)의 경우 구분류기준과 마찬가지로 20대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스포츠서비스업의 매출의 비중이 전년 대비 감소하였고, 19세 이하의 연령대에서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8~13세를 대상으로 하는 스포츠서비스업의 매출은 증가 폭이 가장 크게 나타남

<표 III-29> '12~13년 스포츠서비스업 고객유형별 매출액 비중(신분류기준)

(단위 : %)

구분	7세 이하	8~13세	14~19세	20~39세	40~59세	60세 이상
2012년	5.9	23.4	7.8	23.5	28.1	11.3
2013년	7.6	46.7	14.0	12.0	13.9	5.8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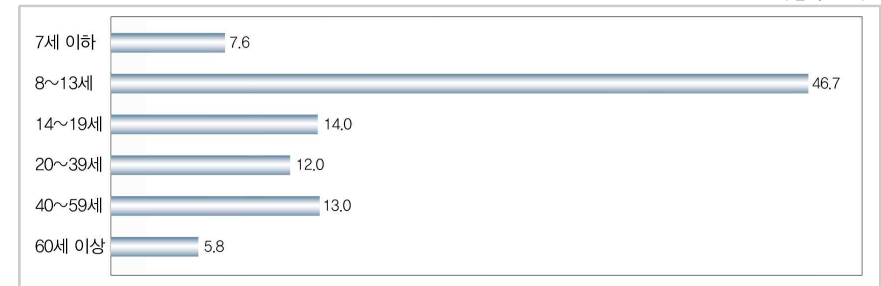


그림 III-14 고객유형별 매출액 비중

## 7 스포츠산업 현안 실태조사 결과

### 7.1 전체 스포츠산업 현안 실태분석

- 스포츠산업의 현안을 파악하기 위하여 대외경쟁력 강화, 육성·발전 장애요인, 육성발전 지원 부문, 매출증대 방안 등 4가지로 분류하여 조사함
  - 대외경쟁력 강화부문의 경우 전년도와 유사하게 “홍보 강화”, “정책부처 지원” 등이 높게 나타남

<표 III-30> '09 ~'13년 대외경쟁력 강화부문

(단위 : %)

구분	전문인력 양성	국산제품 품질제고	자체 브랜드 개발	홍보 강화	대형화/전문화	정책부처 지원	산학연 협력강화	기타	
2009년	23.2	10.3	21.2	17.9	11.2	14.5	0.7	0.9	
2010년	18.1	6.2	8.7	35.3	5.2	21.2	2.4	2.9	
2011년	23.1	6.3	11.6	28.2	7.6	18.6	3.0	1.6	
2012년	구분류	13.4	11.2	11.2	25.1	7.9	23.1	4.1	4.0
	신분류	13.3	11.5	11.8	25.4	7.6	23.1	4.4	2.9
2013년	구분류	13.8	4.7	5.6	30.9	7.1	31.9	1.6	4.5
	신분류	12.6	6.6	7.1	31.9	6.8	29.4	1.7	3.9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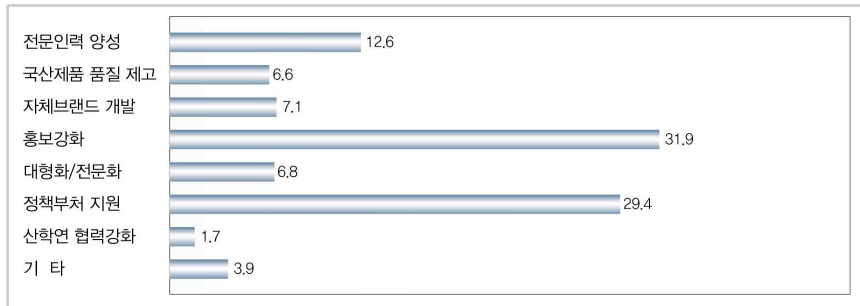


그림 III-15 스포츠산업 대외경쟁력 강화 부문(신분류기준)-2013년

- 육성·발전 장애요인의 경우 “자금부족”, “사업체 영세성” 등에서 높게 나타남. 이는 10인 이하 사업체수가 전체 90%를 상회하여 기인하고 있다고 판단됨
- 그 밖에 “제도규제 과다”, “정부지원 미흡”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표 III-31> 육성발전 장애요인

(단위 : %)

구분	전문인력 부족	사업체 영세성	자금부족	기술정보 부족	제도규제 과다	외국업체 시장잠식	정부지원 미흡	기타	
2009년	17.5	18.4	24.3	8.0	14.3	5.1	11.3	1.1	
2010년	8.1	24.1	23.2	7.2	11.5	2.3	17.8	5.7	
2011년	11.8	26.1	23.9	6.6	11.6	2.7	13.7	3.6	
2012년	구분류	7.4	22.8	20.0	8.9	14.1	5.7	13.8	7.3
	신분류	7.0	22.5	19.4	9.6	14.5	6.1	13.2	7.7
2013년	구분류	9.4	19.7	19.0	4.8	16.6	3.0	16.7	10.8
	신분류	9.2	18.8	19.2	5.6	16.0	4.3	16.6	10.4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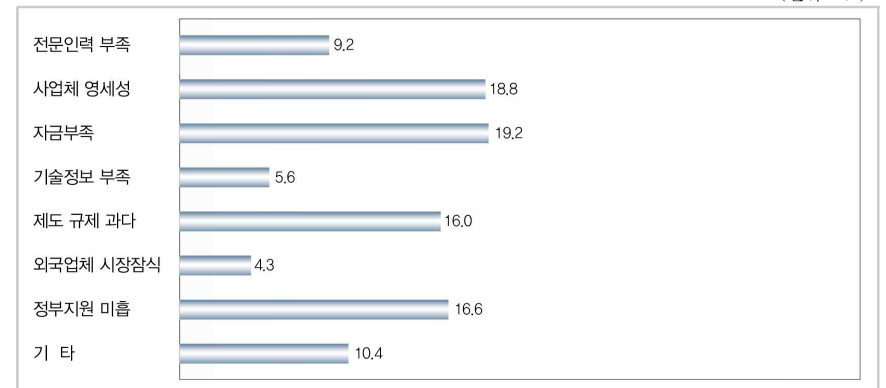


그림 III-16 스포츠산업 육성발전 장애요인(신분류기준)-2013년

- 육성·발전 지원부문에서는 “자금지원확대”를 가장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정부의 지원정책이 점차 범위를 확대하면서 지속적으로 행해지곤 있지만 스포츠 산업 특성상 영세한 업체가 워낙 넓은 범위와 다양한 업종으로 존재하여 지속적인 정책과 전력이 수립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을것으로 판단됨
- 또한, “통합 정보망 구축”, “국제대회 유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정부 차원의 정책 수립과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표 III-32> 육성발전 지원부문

(단위 : %)

구분	전문인력 양성지원	자금지원 확대	연구개발 기술지원	스포츠용품 인증제도	통합정보 망구축	국제대회 유치	국제교류 해외진출	기타	
2009년	20.6	42.9	14.2	2.9	9.4	5.3	2.6	2.2	
2010년	13.4	43.7	7.5	1.8	11.2	12.7	3.3	6.4	
2011년	12.9	50.6	6.8	3.1	9.5	11.8	1.7	3.6	
2012년	구분류	9.5	42.6	8.7	5.5	7.8	13.5	2.5	9.9
	신분류	9.5	42.1	9.0	5.5	7.9	13.9	2.7	9.4
2013년	구분류	11.7	48.0	5.1	2.9	9.0	9.8	1.4	12.2
	신분류	11.3	47.4	5.5	3.6	9.6	9.8	1.5	11.2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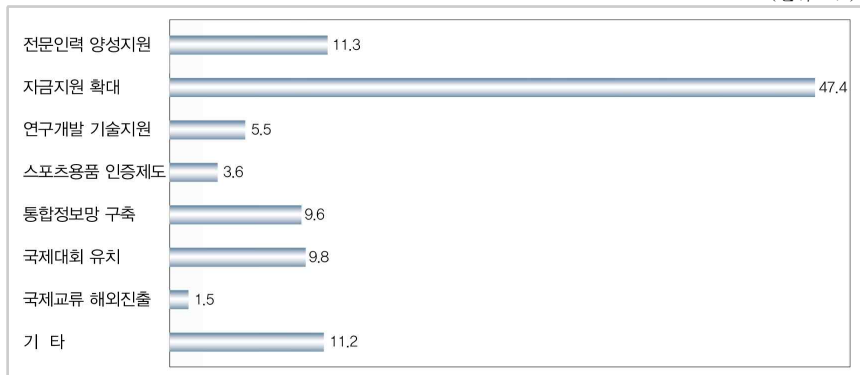


그림 III-17 스포츠산업 육성발전 지원부문(신분류기준)-2013년

- 매출 증대방안으로는 “홍보 및 마케팅 강화”, “내수시장 확대”가 높게 나타남. 이는 영세업체의 국내 경기 불황에 따른 어려움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됨
- 스포츠산업에 대한 내수시장이 최근에 확대되고 내수시장의 경쟁력이 곧 세계시장의 경쟁력이 되고 있는 현실이 높은 비중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III-33> 매출 증대방안

(단위 : %)

구분	전문인력 채용	자체브랜드 신규제품 개발	홍보 및 마케팅 강화	내수시장 확대	해외시장 진출확대	기타	
2009년	16.5	20.8	43.3	14.0	2.9	2.5	
2010년	7.5	9.5	57.6	19.3	1.6	4.5	
2011년	9.6	9.2	55.9	17.8	1.4	6.1	
2012년	구분류	9.0	13.1	38.3	25.2	2.8	11.6
	신분류	9.1	14.1	37.2	25.9	2.9	10.8
2013년	구분류	8.1	8.1	53.6	22.7	1.2	6.4
	신분류	7.5	8.6	51.9	25.0	1.7	5.2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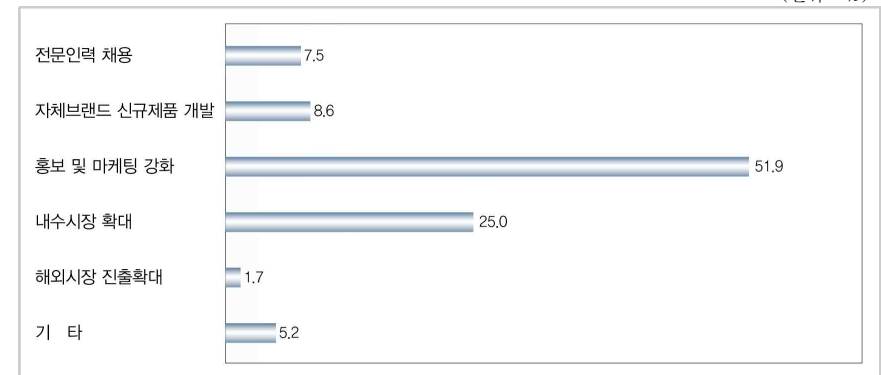


그림 III-18 스포츠산업 매출증대방안(신분류기준)-2013년

## 8 성과 및 제언

### 8.1 성과

- 국가승인통계 유지
  - 통계법 제18조 1항 및 제20조에 의해 승인된 일반통계(승인번호 제11321호)
- 「스포츠산업 특수분류 V. 3」 적용 유지
  - 2013년 기준 스포츠산업실태조사는 2012년 기준조사 시 개편된 스포츠산업 특수분류체계를 적용하여 스포츠산업을 총 65개 세세분류로 진행
  - 2011년 기준조사에서는 스포츠산업을 총 45개 세세분류로 구성하여 진행됨
- 모집단 보완
  - 2012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 자료에서 조사모집단의 포괄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스포츠산업 분류에 해당하는 사업체 리스트의 사업체별 사업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갱신한 스포츠산업 특수분류를 활용하여 모집단을 구성함
    - ※ 또한, 스포츠산업 총 65개 산업세분류 중 10개 산업세분류의 모집단을 보완한 명부를 활용
- 조사표
  - 단조로운 설문 조사표를 가능한 구체화하여 통계조사 결과에 대한 양적, 질적 분석 확대
  - 응답자의 적극적인 협조유도를 위하여 응답자 맞춤형 조사표 설계 및 조사 방식을 도입
  - 조사표의 일관성 및 항목 간 연계성을 고려한 문항 재구성
- 조사결과 내검 및 자료처리
  - 2012년 기준조사와는 동일하게 통계청의 나라통계시스템을 이용하여 자료처리 실행
    - ※ 나라통계시스템은 통계의 기획부터 보고서 생산까지 통계작성 전 과정을 국가통계생산 표

- 준프로세스(KSBPM : Korea Statistics Business Process Model) 기반으로 시스템을 구축하여 표준화시킨 업무프로세서로 기관 간 통계경험과 전문성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임
- ※ 나라통계시스템은 통계기획에서 생산, 서비스, 자료보관까지 통계작성 전 과정을 표준화 체계화하여 통계작성기관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범용 통계정보시스템
- 유사 통계자료, 행정자료, 경영공시자료 등을 수집하여 조사자료와 비교검토, 수준점검을 통하여 자료의 일관성, 정합성, 정확성을 제고
- ※ 조사자료 검증 및 수준분석을 위한 비교자료

- 2012년 사업체기초조사 통계 비교·검토
- 국세청 부가세, 법인세 자료와 비교·검토
- 기업 경영 정보 공시 사이트 및 기관별 홈페이지의 경영 공시자료와 비교·검토

- 현장조사
  - 조사대상 표본수가 전국으로 산재되어 있어 업무량(표본수)이 적은 지역은 조사원 채용에 어려움이 있었음
  - 마사회, 경륜장 등 지사(점)별 실적 파악이 어려운 경우 본부(기업체)에서 일괄 조사하는 방법을 병행하여 조사의 정도 및 효율성 제고
  - 복권발행업, 스키장운영업 등 사업체 개수가 적은 업종은 전수조사 및 본사를 통한 일괄조사를 병행하여 조사의 정도를 제고
  - 표본대체를 통한 편향 및 오차 감소와 현장 업무부담 경감을 위하여 당초 표본 추출시 over sampling을 통하여 최소 표본수 확보에 노력
- 스포츠산업 통계체계 네트워크 구축
  - 2013년 기준조사는 전문 조사 기관인 (주)포커스컴퍼니 협조로 통계 작성 및 관리 체계를 구축
  - 표준지침(스포츠산업실태조사 조사지침서 등)을 마련하여 조사과정, 조사원교육, 자료처리 등 전반적인 조사체계 구축

### 8.2 제언

#### ● 표본명부

- 동 조사는 스포츠산업에 대한 모집단이 정확하게 구축되어야 신뢰성 있는 통계가 작성 가능하므로 향후 조사시에도 모집단 확보 및 보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전국 사업체조사 활용 및 관련 산업 유무, 최신 모집단 자료 수집, 행정자료 등을 통한 모집단 보완 등을 통하여 정확한 표본 추출률이 작성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이 필요함

#### ● 스포츠산업 특수분류의 재분류

- 산업분류의 구분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며, 중분류내에 산업분류간 동질성이 부족하여 특성항목별 조사사항에 애로
  - 놀이터용 장비 제조업, 회전목마 제조업, 기타 흥행장용품 제조업, 기원운영업은 포함되나 유원지 운영업, 기타 오락장 운영업들이 제외되며, 복권발행업, 스포츠 클럽 운영업, 그 외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등은 특성항목인 연간 이용인원 수를 조사할 수 없음
- 스포츠산업 특수분류에 정의되어 있는 세부항목의 범위가 확실하지 않아 현장조사시 어려움이 있었음
  - 스포츠의류, 경기용 신발, 스포츠용 자전거, 흥행장용품 등의 기준, 골프용, 기타 운동용 가방, 스포츠오락용 기계, 바둑 및 장기 등의 포함 여부 등 구분이 곤란

#### ● 조사결과

- 스포츠산업실태조사는 표본조사를 통하여 모수를 추정함에 따라 표본오차가 발생하므로 결과 활용시 표본오차를 고려하여 공표단위를 조정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음
- 한정된 예산에 따른 최적의 표본을 산출하였으나, 보다 신뢰수준이 높은 자료를 추정하기 위하여 표본 수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 조사방법

- 조사기준과 기업체 회계기준의 차이에 따라 사업실적이 다르게 작성되어 총량 추정에 변수로 작용하므로 추후 조사 시 조사범위의 명확한 개념 정의가 필요
  - 정부기관 사업을 위탁받은 경우 위탁 수수료를 사업실적으로 조사
    - ※ 부산지방공단 스포원, 창원경륜공단, 스포츠도토의 경우 각각 부산광역시, 창원시, 체육진흥공단의 위탁사업자로 기업회계에서는 위탁수수가 사업실적임

# 04 부 록





【부록 1】 스포츠산업 특수분류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KSIC	산업분류명
스포츠 시설업	101 스포츠 시설 운영업	10101 경기장 운영업	1010101 실내 경기장 운영업	91111	실내 경기장 운영업
			1010102 실외 경기장 운영업	91112	실외 경기장 운영업
			1010103 경주장 운영업	91113	경주장 운영업
		10102 참여스포츠 시설 운영업	1010201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91131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1010202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91132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1010203 수영장 운영업	91133	수영장 운영업
			1010204 볼링장 운영업	91134	볼링장 운영업
			1010205 당구장 운영업	91135	당구장 운영업
			1010206 골프연습장 운영업	91136	골프연습장 운영업
			1010207 스포츠 무도장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1010208 체육공원 운영업	91292	체육공원 및 유사 공원 운영업
		1010209 기원 운영업	91293	기원 운영업	
		10103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1010301 골프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1010302 스키장 운영업	91122	스키장 운영업
		10104 수상스포츠 시설 운영업	1010401 낚시장 운영업	91231	낚시장 운영업
	1010499 기타 수상스포츠시설 운영업		91239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10199 기타스포츠 시설 운영업	1019900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91139	그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102 스포츠시설 건설업	10200 스포츠 건설업	1020001 스포츠시설 조정 건설업	41226
	1020002 스포츠 토목시설물 건설업			41229	기타 토목시설물 건설업
	스포츠 용품업	201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	20101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	2010101 운동 및 경기용 장비 제조업	33309
2010102 체력단련용 장비 제조업				33409	기타 오락용품 제조업
2010103 자전거 제조업				33301	체조, 육상 및 체력단련용 장비
2010104 낚시 및 수렵용 장비 제조업				31991	자전거 및 환자용 차량 제조업
2010104 낚시 및 수렵용 장비 제조업				33303	낚시 및 수렵용구 제조업
2010105 놀이터용 기구 제조업				33302	놀이터용 장비 제조업
2010106 스포츠 응원용품업				33999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제품 제조업
2010199 기타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			31120 25200	오락 및 스포츠용 보트 건조업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	
20102 스포츠의류 및 관련 섬유제품 제조업			2010201 스포츠 의류 제조업	14191	셔츠 및 체육복 제조업
			2010202 캠핑용 직물제품 제조업	13224	천막 및 기타 캔버스 제품 제조업
		2010203 스포츠 관련 직물제품 제조업	13229	기타 직물제품 제조업	
		2010204 스포츠 관련 의류부분품 제조업	14199	그외 기타 봉제의복 제조업	
20103 스포츠가방 및 신발 제조업		2010301 스포츠 가방 제조업	15129	가방 및 기타 보호용 케이스 제조업	
		2010302 스포츠 신발 제조업	15219	기타 신발 제조업	
		2010303 스포츠 관련 신발부분품 제조업	15220	신발부분품 제조업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KSI C	산업분류명			
스포츠 용품업	202 운동 및 경기용품 유통 및 임대업	20201 운동 및 경기용품 도매업	2020101	운동 및 경기용품 도매업	46464	운동 및 경기용품 도매업		
			2020102	자전거 도매업	46463	장난감 및 취미용품 도매업		
			2020103	스포츠 의류 도매업	46465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도매업		
			2020104	스포츠 가방 도매업	46413	셔츠 및 외의 도매업		
			2020105	스포츠 신발 도매업	46491	가방 및 여행용품 도매업		
		20202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2020201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47631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2020202	자전거 소매업	47640	게임용구, 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		
			2020203	스포츠 의류 소매업	47632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2020204	스포츠 가방 소매업	47416	셔츠 및 기타 의복 소매업		
			2020205	스포츠 신발 소매업	47430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2020206	스포츠 관련 무점포 소매업	47420	신발 소매업		
					47911	전자상거래업		
					47919	기타 통신 판매업		
					47999	그외 기타 무점포 소매업		
					47993	방문 판매업		
	2020300	운동 및 경기용품 임대업	69210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용품 임대업				
	301 스포츠 경기 서비스업	30101	스포츠 경기업	3010100	스포츠 경기업	91191	스포츠 클럽 운영업	
		30102	스포츠 베팅업	3010201	스포츠 복권발행 및 판매업	91241	복권발행 및 판매업	
				3010299	기타 스포츠 베팅업	91249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30103	스포츠 마케팅업	3010301	스포츠 에이전트업	73901	매니저업	
				3010302	회원권 대행 판매업	73903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	
3010303				스포츠 마케팅 대행업	71531	경영컨설팅업		
3010399				기타 스포츠 마케팅업	91199	그외 기타스포츠 서비스업		
3020101				스포츠 신문 발행업	58121	신문 발행업		
3020102				스포츠 잡지 및 장기간물 발행업	58122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		
302 스포츠 정보 서비스업		20201	스포츠 미디어업	3020103	스포츠 관련 라디오 방송업	60100	라디오 방송업	
	3020104			스포츠 관련 지상파 방송업	60210	지상파 방송업		
	3020105			스포츠 관련 프로그램 공급업	60221	프로그램 공급업		
	3020106			스포츠 관련 유선 방송업	60222	유선 방송업		
	3020107			스포츠 관련 위성 및 기타 방송업	60229	위성 및 기타 방송업		
	30299			기타 스포츠 정보 서비스업	3029900	기타 스포츠 정보서비스업	63991	데이터베이스및온라인정보 제공업
	303 스포츠 교육기관			30300	스포츠 교육기관	3030001	스포츠 교육기관	85611
		3030099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			85612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39901	스포츠 게임 개발 및 공급업			3990101	온라인·모바일 스포츠 게임 개발 및 공급업	58211
	3990199			기타 스포츠 게임 개발 및 공급업	58219	기타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39902	스포츠 여행업	스포츠 여행업	75211	일반 및 국외 여행사업				
			75212	국내 여행사업				
			75290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서비스업				

### 【부록 2】 한국표준산업분류 설명 - 스포츠산업분류 부문

#### 01 스포츠시설업

##### 101 스포츠 시설 운영업

##### 10101 경기장 운영업

###### • 분류코드 1010101 실내 경기장 운영업

경기를 위한 관람석이 있는 실내 경기장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 분류코드 1010102 실외 경기장 운영업

각종 필드경기를 위한 관람석이 있는 실외 경기장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예 시

- 육상경기
- 야구
- 하키
- 축구
- 럭비

###### • 분류코드 1010103 경주장 운영업

경마, 자동차, 사이클, 동물 등이 경기할 수 있는 관람석이 있는 경주장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예 시

- 경륜장
- 경마장
- 자동차 경주장
- 투우장

##### 제 외

- 경기장과 독립된 마권 발행소

## 10102 참여스포츠시설 운영업

### ◆ 분류코드 1010201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동일 건물내에서 복합적인 오락운동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예 시

·종합 체육시설·복합 체육시설

### ◆ 분류코드 1010202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심신을 단련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예 시

·헬스클럽

#### 제 외

·무도장  
·교육목적의 체력단련시설 운영

### ◆ 분류코드 1010203 수영장 운영업

관람석이 없는 수영장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제 외

·관람석이 있는 실내 수영경기장

### ◆ 분류코드 1010204 볼링장 운영업

볼링장 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 분류코드 1010205 당구장 운영업

당구장 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 분류코드 1010206 골프연습장 운영업

골프연습장 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 분류코드 1010207 스포츠 무도장 운영업

주류 및 식사가 제공되지 않는 무도장, 댄스홀 등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예 시

·무도장 ·댄스홀

#### 제 외

· 무도유희주점 및 디스코클럽 운영  
· 교육목적의 댄스교습소 운영

### ◆ 분류코드 1010208 체육공원 운영업

일반대중이 여가생활을 하면서 이용할 수 있는 경기용 코트, 운동장 등을 설치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배양함을 목적으로 조성된 체육공원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 분류코드 1010209 기원 운영업

바둑, 장기 및 유사 경기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제 외

·교육목적의 바둑교실 운영

## 10103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 ◆ 분류코드 1010301 골프장 운영업

골프코스 및 기타 관련 설비를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 사업체는 본질적인 산업활동을 수행하면서 부수적으로 관련 장비임대 및 강습을 수행할 수 있다

#### 제 외

·골프연습장

### ◆ 분류코드 1010302 스키장 운영업

숙박시설과 독립된 스키장 및 스키리프트를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 사업체는 본질적인 산업 활동을 수행하면서 부수적으로 스키강습 및 장비임대 등을 할 수 있다.

**제 의**

- 눈썰매장
- 숙박시설과 결합된 스키장

### 10104 수상스포츠시설 운영업

◆ **분류코드 1010401 낚시장 운영업**

낚시장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 유료 낚시터 운영
- 실내 낚시장 운영

◆ **분류코드 1010499 기타 수상스포츠시설 운영업**

기타 수상오락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 레저보트용 정박시설 운영업
- 오락용 보트임대(물놀이 시설 내)
- 오락용 낚시배 운영

**제 의**

- 유료 낚시터 운영

### 10199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 **분류코드 1019900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이 산업에는 독립된 운동선수, 프로게이머, 경마 및 경주차 소유주, 코치, 스포츠 행사 기획자, 경기후원단체, 스포츠 연맹 및 규제 단체활동, 경마 및 경주건의 훈련활동 등이 포함된다.

**제 의**

- 개인교사, 지도자에 의한 스포츠 지도

### 102 스포츠시설 건설업

◆ **분류코드 1020001 스포츠시설 조경 건설업**

계약 및 수수료에 의하여 운동장 등의 스포츠시설 외부환경을 조성하는 토목공사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조경수, 잔디, 화초 등 각종 조경용 식물을 식재 또는 파종하거나 조경 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가 결합 수행될 수 있다.

**예 시**

- 운동장 공사

◆ **분류코드 1020002 기타 토목시설물 건설업**

기타 토목시설물을 건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 스타디움 공사
- 경기장 공사

## 02 스포츠용품업

### 201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

#### 20101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

##### ◆ 분류코드 2010101 운동 및 경기용 장비 제조업

코트 및 필드 게임용구, 등산장비, 동계경기용 장비, 수중경기용 장비, 펜싱용구, 당구 장비, 볼링 장비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된다.

###### 예 시

- |                        |                |
|------------------------|----------------|
| · 펜싱용구 제조              | · 라켓 제조        |
| · 탁구용 기구 제조            | · 공 제조(각종 경기용) |
| · 장갑류 제조(경기용)          | · 설상 스키 제조     |
| · 양궁장비 제조              | · 배트 및 스틱류 제조  |
| · 골프글러브 제조             | · 골프장비 제조      |
| · 볼링 및 당구용 장비(볼 포함) 제조 |                |

###### 제 외

- 체조, 육상 및 체력단련용 장비 제조
- 낚시 및 수렵용구 제조

##### ◆ 분류코드 2010102 체력단련용 장비 제조업

체조용 장비, 트랙 및 육상경기 용구, 복싱용 링, 배구 및 농구장 설치장비, 장비체력단련용 기계장치 등과 같은 장비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예 시

- |            |              |
|------------|--------------|
| · 헬스 장비 제조 | · 체조용품 제조    |
| · 체조용 링 제조 | · 클라이밍 로프 제조 |
| · 바렐 제조    | · 스프링보드 제조   |

###### 제 외

- 어린이 놀이터용 장비 제조
- 복싱 글러브 및 보호물 제조

##### ◆ 분류코드 2010103 자전거 제조업

한개 이상의 바퀴가 장착된 각종 비동력 자전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예 시

- 이륜자전거 및 기타 자전거 제조(원동기가 장착되지 않은)

###### 제 외

- 어린이용 삼륜자전거 제조

##### ◆ 분류코드 2010104 낚시 및 수렵용 장비 제조업

낚시 및 수렵용 장비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예 시

- |            |              |
|------------|--------------|
| · 낚시장비 제조  | · 조류 유인용구 제조 |
| · 인조미끼 제조  | · 수렵용구 제조    |
| · 낚시용 망 제조 |              |

###### 제 외

- |           |                      |
|-----------|----------------------|
| · 양궁장비 제조 | · 수렵 및 경기용 총포탄 제조    |
| · 어망 제조   | · 골프장비(공, 글러브 제외) 제조 |

##### ◆ 분류코드 2010105 놀이터용 기구 제조업

놀이터에 설치되는 놀이용 장비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으로서 특정 산업에 분류되지 않은 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 시소 제조
- 미끄럼틀 제조
- 회전 그네 제조
- 놀이대 제조

◆ **분류코드 2010106 스포츠 응원용품업**

스포츠경기에서 이용되는 스포츠 응원용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 응원도구 제조

◆ **분류코드 2010199 기타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

달리 분류되지 않은 운동 및 경기용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 범선 제조
- 요트 제조
- 카누 제조
- 수렵용 공기총 제조
- 경기용 총포탄 제조

20102 스포츠 의류 및 관련 섬유제품 제조업

◆ **분류코드 2010201 스포츠 의류 제조업**

스포츠 관련 의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 체육복 제조

◆ **분류코드 2010202 캠핑용 직물제품 제조업**

캠핑용 직물제품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 캠핑용 직물제품 제조

◆ **분류코드 2010203 스포츠 관련 직물제품 제조업**

기타 스포츠 관련 직물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 구명자켓 제조
- 구명벨트 제조

◆ **분류코드 2010204 스포츠 관련 의류부분품 제조업**

스포츠 관련 특수 의류 및 의류부분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20103 스포츠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분류코드 2010301 스포츠 가방 제조업**

스포츠 관련 가방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 골프 가방 제조
- 낚시 가방 제조
- 등산용 배낭류 제조

◆ **분류코드 2010302 스포츠 신발 제조업**

운동용 신발, 경기용 신발 등 스포츠 관련 신발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 경기용 신발 제조
- 운동화 제조

◆ **분류코드 2010303 스포츠 관련 신발부분품 제조업**

각종 재료로 스포츠 관련 신발 제조용 재단제품 및 부속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고무 또는 플라스틱을 성형하여 신발부분품을 제조하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

제 의

- 스포츠 신발용 부분품(재단품) 제조

## 202 운동 및 경기용품 유통 및 임대업

### 20201 운동 및 경기용품 도매업

◆ **분류코드 2020101 운동 및 경기용구 도매업**

각종 운동 및 경기용품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 운동장비 도매
- 등산장비 및 용품 도매
- 경기용품 도매
- 당구장비 및 물품 도매
- 낚시도구 도매

◆ **분류코드 2020102 자전거 도매업**

자전거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 자전거 및 부품 도매

◆ **분류코드 2020103 스포츠 의류 도매업**

스포츠 관련 의류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 체육복 도매

◆ **분류코드 2020104 스포츠 가방 도매업**

스포츠 관련 가방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 등산용 배낭류 도매

◆ **분류코드 2020105 스포츠 신발 도매업**

가죽, 직물, 플라스틱, 고무 등으로 제조된 각종 스포츠 관련 신발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 운동화 도매

### 20202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 **분류코드 2020201 운동 및 경기용구 소매업**

스포츠 및 경기 용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 등산 장비(텐트 포함) 소매
- 헬스기구 소매
- 낚시장비 소매
- 바둑 소매
- 펜싱, 검도 장비 소매
- 코트 및 필드게임 장비 소매
- 당구장비 소매

◆ **분류코드 2020202 자전거 소매업**

자전거를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자전거 소매와 수리를 병행하는 경우에는 포함된다.

**예 시**

- 자전거 및 자전거 부품 소매

◆ **분류코드 2020203 스포츠 의류 소매업**

스포츠 관련 의류를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 체육복 소매

◆ **분류코드 2020204 스포츠 가방 소매업**

스포츠 관련 가방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 등산용 배낭류 소매

◆ **분류코드 2020205 스포츠 신발 소매업**

각종 재료의 스포츠 관련 신발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 운동화 소매

◆ **분류코드 2020206 스포츠 관련 무점포 소매업**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직접 판매할 수 있는 매장(점포)을 개설하지 않고 전자상거래 및 기타통신 판매 방법에 의하여 스포츠 관련 상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 제조사업체가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제조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 제조업으로 분류
- 도매 사업체가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사업자를 대상으로 상품을 도매하는 경우 도매업으로 분류
- 소비자를 대상으로 직접 소매하는 일정 매장을 운영하면서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소매를 병행하는 경우 소매업으로 분류
- 각종 정보 및 기타 서비스를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제공하는 경우 서비스 유형별로 분류

20203 운동 및 경기용품 임대업

◆ **분류코드 2020300 운동 및 경기용품 임대업**

각종 운동용품을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 스키 임대
- 카누 임대
- 자전거 임대

03

스포츠 시설업

301 스포츠 경기 서비스업

30101 스포츠 경기업

◆ **분류코드 3010100 스포츠 경기업**

프로 및 실업 경기단체 등과 같이 스포츠 활동에 참가할 기회를 제공해주는 스포츠클럽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여기에는 게임단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된다.

예 시

- 프로야구단
- 동계스포츠 클럽
- 체스 클럽
- 프로게임단
- 프로축구단
- 실업경기단체
- 사격 클럽

제 외

- 단순 친목의 운동 동호회 활동

30102 스포츠 베팅업

◆ **분류코드 3010201 스포츠 복권발행 및 판매업**

스포츠 복권을 발행하거나 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 스포츠복권 발행

◆ **분류코드 3010299 기타 스포츠 베팅업**

경마, 경륜, 경정 등 베팅관련 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예 시

·경주장에서 운영하는 마권 등 경주권 발행

## 30103 스포츠 마케팅업

## ◆ 분류코드 3010301 스포츠 에이전트업

스포츠인을 대리하고 관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 사업체는 고객을 위하여 계약협상, 금전 문제 관리, 경력홍보 등을 수행한다.

## 예 시

·스포츠인 매니저

## ◆ 분류코드 3010302 회원권 대행 판매업

스포츠 관련 무형 재산권을 증개 및 알선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예 시

·골프회원권 증개

## ◆ 분류코드 3010303 스포츠 마케팅 대행업

스포츠 관련 마케팅에 관하여 자문 및 지원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 분류코드 3010399 기타 스포츠 마케팅업

이 산업에는 독립된 운동선수, 프로게이머, 경마 및 경주차 소유주, 코치, 스포츠 행사 기획자, 경기후원단체, 스포츠 연맹 및 규제 단체 활동, 경마 및 경주건의 훈련활동 등이 포함된다.

## 예 시

·개인교사, 지도자에 의한 스포츠 지도

## 302 스포츠 정보 서비스업

## 30201 스포츠 미디어업

## ◆ 분류코드 3020101 스포츠 신문 발행업

일반대중이 관심을 갖는 스포츠 뉴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일간 및 주 3일 이상 발생하는 스포츠 신문을 발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예 시

·스포츠신문 발행

## 제 의

·생활정보지 발행

·전문회보, 주간뉴스 및 주간지

·방송 또는 신문사, 출판사 및 기타 언론사에 뉴스자료 제공 활동

## ◆ 분류코드 3020102 스포츠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

스포츠 관련 전문 또는 일반적인 내용에 관한 주간, 순간, 월간, 계간, 연간 등의 스포츠 정기간행물 및 잡지 등을 발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예 시

·스포츠 월간지 발행

## 제 의

·스포츠신문 발행

## ◆ 분류코드 3020103 스포츠 관련 라디오 방송업

직접 제작하거나 구입한 스포츠 관련 라디오 방송프로그램을 방송시설을 통하여 송출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 분류코드 3020104 스포츠 관련 지상파 방송업

직접 제작하거나 구입한 스포츠 관련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을 지상파 방송시설을 통하여 송출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중계소 또는 위성에 의한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의 전송 서비스 활동

◆ **분류코드 3020105 스포츠 관련 프로그램 공급업**

직접 제작하거나 구입한 스포츠 관련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을 유선, 위성 및 기타 방송사업체에 공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 프로그램은 유선 및 위성방송을 통하여 시청자에게 송출된다.

**예 시**

·유선방송 프로그램 공급업 ·위성방송 프로그램 공급업

◆ **분류코드 3020106 스포츠 관련 유선 방송업**

직접 제작하거나 프로그램 공급업자로부터 공급받은 스포츠 관련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을 유선으로 송출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스포츠 케이블방송

◆ **분류코드 3020107 스포츠 관련 위성 및 기타 방송업**

직접 제작하거나 프로그램 공급업자로부터 공급받은 스포츠 관련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을 위성 및 기타의 방법으로 송출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30299 기타 스포츠 정보서비스업

◆ **분류코드 3029900 기타 스포츠 정보서비스업**

스포츠 관련 자료를 수집 및 조합하여 일정 포맷에 따라 가공된 정보를 컴퓨터에 수록하여 주문에 따라 자동응답전화, 온라인, 디스켓 등의 전자매체로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정마 정보 서비스

303 스포츠 교육기관

30300 스포츠 교육기관

◆ **분류코드 3030001 스포츠 교육기관**

축구, 체조, 무술 등 스포츠에 관한 교육을 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태권도학원  
·요가학원  
·축구교실  
·체육 입시학원

◆ **분류코드 3030099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

바둑교육 등 기타 스포츠에 관한 교육을 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바둑교실

399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39901 스포츠 게임 개발 및 공급업

◆ **분류코드 3990101 온라인·모바일 스포츠 게임 개발 및 공급업**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되는 스포츠를 주제로 한 게임소프트웨어를 개발·공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휴대폰 및 PDA 등에 사용되는 모바일 스포츠 게임소프트웨어를 개발·공급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예 시**

·스포츠 온라인 게임 S/W 개발  
·스포츠 PDA 게임 S/W 개발  
·스포츠 휴대폰용 게임 S/W 개발  
·스포츠 모바일용 게임 S/W 개발

◆ **분류코드 3990199 기타 스포츠 게임 개발 및 공급업**

스포츠를 주제로 한 컴퓨터 패키지게임, 아케이드게임 및 비디오게임용의 소프트웨어를 개발·공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휴대용 게임기기에 이용되는 스포츠 게임 소프트웨어를 개발·공급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예 시**

- 스포츠 아케이드 게임 S/W 개발업
- 스포츠 비디오 콘솔게임 S/W 개발
- 스포츠 PC 패키지게임 S/W 개발
- 스포츠 휴대용게임기용 게임 S/W 개발

**제 외**

- 스포츠 온라인 및 모바일용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39902 스포츠 여행업

◆ **분류코드 3990200 스포츠 여행업**

국내, 국외를 여행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스포츠 여행관련 시설이용의 알선, 여행에 관한 안내, 계약체결의 대리 및 기타 여행의 편의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부록 3】 스포츠산업 관련 용의 정의**

◆ **스포츠산업**

스포츠 산업이란 스포츠를 기업활동의 수익대상으로 바라보고 스포츠와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의 창출하는 일체의 생산활동

◆ **스포츠음료**

스포츠음료는 스포츠 현장에서 적절한 수분 공급 및 에너지원의 부분적 재보충을 목적으로 하여 제조된 당분과 전해질 등이 포함된 기능성 음료

**예 시**

- 포카리스웨트(동아오츠카)
- 게토레이(한국펩시콜라)
- 파워에이드(한국코카콜라)
- 스포트라이트(광동)
- 파워 오투(농심)

◆ **캠핑용 식물제품**

캠핑용 식물제품은 캠핑에 사용되는 텐트, 로프와 같은 직기에 걸쳐 짠 물건으로 면직물, 모직물, 견직물 등의 제품

**예 시**

- 텐트(코베아, 콜맨 등)
- 침낭(네파, 카벨라스)
- 로프

◆ **구멍 자켓, 구멍 벨트**

구멍 자켓과 구멍 벨트는 수상용 인명구조용을 목적으로 부력재 또는 co2 gas를 사용하여 제작된 제품

**예 시**

- 구멍조끼(버팔로)
- 구멍벨트(씨울프)

◆ **스포츠의류 제조**

스포츠 의류 제조란 스포츠 활동을 목적으로 하거나 스포츠 종목의 특성인 기능적, 활동적, 심리적, 사회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여 생산되는 의류제품

**예 시**

- 르까프
- 프로스펙스
- 휠라

## ◆ 스포츠의류 부분품

스포츠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스포츠 의류 제조에 필요한 부품

### 예 시

- 한길섬유      · 고어텍스      · COLDBACK      · SILFINE

## ◆ 등산용 배낭

등산에 사용되는 물건을 넣어서 등에 질 수 있도록 형질이나 가죽 따위로 만든 가방

### 예 시

- 콜롬비아      · K2      · 코요롱      · MILLET

## ◆ 경기용 및 특수용 신발 제조

경기용 및 특수한 종목을 목적으로 개발된 신발의 제조

### 예 시

- 육상 스파이크      · 발레슈즈      · 농구화      · 테니스화

## ◆ 경기용 운동화 부분품

경기를 하는 목적으로 제작된 운동화의 부품

### 예 시

- 축구화 밑창(파라마스 회사)

## ◆ 수렵용 공기총, 경기용 총포탄

수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압축 공기의 힘을 이용하여 탄알이 발사되도록 만든 총, 경기용 총포탄은 경기에 사용되는 총포의 탄환

### 예 시

- 공기총(덕일, 신성산업)      · 총포탄((주)풍산)

## ◆ 범선, 요트, 카누, 카약

- 범선은 바람을 이용한 선박으로 돛단배 또는 돛배라고 불리우며,
- 요트는 배안에 세워진 돛대와 고물(뒷부분)에 달린 키를 조정하면서 바람을 이용하여 나아가

는 선박

- 카누는 선수·선미가 뺄족하고 1개 이상의 노로 움직이는 경량의 소형 선박으로 정의
- 카약은 좌석에 앉아 발을 앞으로 하고 노를 좌우로 번갈아 저어 빠르기를 겨루는 카누 경기

### 예 시

- 범선, 요트(베스트마린, 코요롱마린(구매, 대여업) 등)
- 카누, 카약(콜맨, K2 등)

## ◆ 무도장

입장료 등을 받고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를 할 수 있는 장소

### 예 시

- 스타 무도장      · 천호 무도장      · 을지 무도장

## ◆ 체육공원 운영

도시공원법에 의한 도시공원의 세분 중 하나로 주로 운동경기나 야외활동 등 체육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배양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을 운영

### 예 시

- 올림픽 공원      · 금정 체육공원      · 한강공원

## ◆ 스포츠도토

대중스포츠를 대상으로 경기결과를 예측 투표하여 경기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환급금을 교부하는 스포츠레저 게임(축구, 농구, 야구, 골프 등)

### 예 시

- 스포츠도토      · 스포츠 프로토

## ◆ 스포츠인 매니저

스포츠인 매니저는 선수의 입단, 연봉, 인도스먼트(광고, 협찬, 라이센싱, 출판 등), 미디어 관계 관리를 큰 축으로하여 선수의 훈련지원, 재무관리, 문제해결 법적자문에 이르는 모든 보조적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을 지칭

### 예 시

- IB스포츠      · 세마스포츠마케팅

### ◆ 스포츠용 자전거

견고하고 전문산악용으로 달릴 수 있도록 설계된 MTB를 포함하여 일반온로드 위주로 달리면서도 MTB처럼 스포츠틱한 디자인과 구성을 가진 자전거(싸이클, 자전거모기용 BMX 등)

**예 시**

- 삼천리                      · 코텍스                      · 알톤

### ◆ 댄스교습

시간과 공간 속에 존재하는 육체의 율동적인 예술 활동을 교습(밸리댄스, 탭댄스, 포크댄스, 사교댄스, 힙합댄스 등)

**예 시**

- DFA Academy                      · 슈퍼브댄스 스튜디오

### 【부록 4】 조사표와 결산서의 관계

#### | 도소매업 |

(단위 : 백만원)

과 목	금 액		조사표 항목	비 고
I. 매출액		1,234	⑧항 (1) 매출액	
1. 총매출액	1,234			
상품매출액	1,000			
기타영업수익	234			
II. 매출원가		740	⑧항 (2)영업비용 가.매출원가	
1. 기초상품매출액	45			
2. 당기상품매출액	735			
3. 기말상품매출액	40			
III. 매출총이익		494		
IV. 판매비와 관리비		380	⑧항 (2)영업비용 나.판매비와 관리비	
1. 급여	200			
2. 퇴직급여	20			
:	:	:		
11. 수도광열비	5			
12. 기타	30			
V. 영업이익		114	⑧항 (3)영업이익	

#### | (교육)서비스업 |

(단위 : 백만원)

과 목	금 액		조사표 항목	비 고
I. 매출액		1,234	⑧항 (1) 매출액	
1. 상품매출액	234			
2. 용역매출액	1,000			
II. 매출원가		623	⑧항 (2)영업비용 가.매출원가	
1. 상품매출원가	123			
2. 용역매출원가	500			
III. 매출총이익		494		
IV. 판매비와 관리비		380	⑧항 (2)영업비용 나.판매비와 관리비	
1. 급여	200			
2. 퇴직급여	20			
:	:	:		
11. 수도광열비	5			
12. 기타	30			
V. 영업이익		114	⑧항 (3)영업이익	

| 제조업 |

(단위 : 백만원)

과 목	금 액	조사표 항목	비 고
I. 매출액	1,234	⑧항 (1) 매출액	
1. 제품매출액	1,000		
2. 상품매출액	234		
II. 매출원가	623	⑧항 (2)영업비용 가.매출원가	
1. 제품매출원가	523		
2. 상품매출원가	100		
III. 매출중이익	494		
IV. 판매비와 관리비	380	⑧항 (2)영업비용 나.판매비와 관리비	
1.급여	200		
2.퇴직급여	20		
∴	∴		
11. 소모품비	5		
12. 기타	30		
V. 영업이익	114	⑧항 (3)영업이익	

【부록 5】 스포츠산업실태조사 조사표



안녕하십니까?  
 귀 사업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한국스포츠개발원)와 포커스컴퍼니에서는 「2013년 기준 스포츠산업 실태조사」를 2014. 9. 1~ 10. 22 기간 중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우리나라 스포츠산업 전반에 대한 현황 및 동향을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스포츠산업 진흥 및 육성,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통계자료로 제공되며,  
 귀 사업체에서 제공해 주신 자료는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해 응답내용 및 사업체의 비밀에 관한 사항은 철저히 보호되고 있습니다.  
 다소 번거롭고 바쁘시더라도 스포츠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정확한 통계가 작성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 9.

\*는 조사항이 가입하는 단입니다.

*조사원ID	*행정구역 분류번호	*산업유형	*사업체 고유번호

일반사항 **귀 사업체의 사업체명, 대표자명, 창설연월, 소재지 및 사업자등록번호는 어떻게 됩니까?**

1 사업체명			
2 대표자명	1 남 2 여	3 창설연월	년 월
4 소재지	읍·면·(법정)동 리 법정·시장·삼가	번지 동	호 통 반 층 호
5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체명 : 법인명과 실제 통용영향이 다른 경우 공식적 영칭을 기재한 후 ( )에 실제 통용영향을 기입  
 \* 창설연월 : 현재의 산업활동(업종)을 시작한 시기

6 조직형태 **귀 사업체의 조직형태는 무엇입니까?**

1 개인사업체	2 회사법인	3 회사외의 법인	4 비법인단체	5 국가·지방자치단체
6a 사업체구분 회사법인·회사외의 법인인 경우만 응답 1 단독사업체 2 본사·본점 3 공장·지사(점), 영업소 등				
6b 자본금 회사법인외엔서 단독사업체, 본사·본점인 경우만 응답 ( ) 억만원				

\* 회사외의 법인 : 인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사업체로 지단법인, 사단법인, 특수법인(법무, 회계법인, 공사, 공단) 등  
 \* 비법인단체 : 법인격이 없는 단체나 모임으로 종교단체, 문화단체, 후원회 등



### 7 종사자수 2013년 12월 31일 현재 종사자 수 인력충원 현황 및 연간 급여액 어떻게 됩니까? (단위 : 명, 백만원)

	종사자수			연간 급여액	인력충원 현황	
	남	여	계		'13년 신규자수	'14년 신규자수 (계좌입 인입 포함)
합 계(①+②+③+④+⑤)				전액비예외비 비전만 예외		
① 상용근로자				/		
② 임시 및 일용근로자						
③ 자영업자						
④ 무급가족종사자						
⑤ 기타종사자						

2013.12.31. 현재 종사자 수를 기업연말(법인) 단, 계절성을 지닌 사업체(수영장, 스키 등)는 영업기간 중 최장종 종사자 수를 기업  
 ① 상용근로자 :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임금근로자 또는 고용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고 정규직원으로 일하는 근로자로서 사업체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재고용계약은 영사적 또는 일회적 계약 모두 포함함  
 ② 임시 및 일용근로자 : 고용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로서 사업체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자  
 ③ 자영업자 : 개인 사업체를 소유하여 자신의 책임 하에 직접 경영하는 자(법인사업체 대표자는 자영업자가 아님)  
 ④ 무급가족종사자 : 자영업자의 가족이나 친인척으로 임금을 받지 않고 해당 사업체 정규 근무시간의 1/3이상 종사하는 자  
 ⑤ 기타 종사자 : 일반 실직에 따라 수주료 또는 봉사료 등을 조사 대상 사업체에서 직접 지급하는 자기로금 등 일정 급여는 없으며, 만약 일정급여를 지급하면 계약기간에 따라 상용, 임시 및 일용종로 기업  
 ※ 연간급여액은 상용근로자의 급여·제수당·상여금을 합한 금액을 기업하의 복리후생비, 퇴직금은 제외미지급 급여액은 포함

### 8 사업실적 2013년 1년 동안 영업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 재무제표 작성 여부 ① 작성 ② 미작성 ⇨ 해당란에 / 표시  
 ※ 재무제표를 작성할 경우 사업실적은 재무제표와 일치로 시키고, 재무제표를 미작성 시 실제 사업실적을 항목별로 구분하여 기입

(1) 매출액(수익액)	2013년 1년간 영업활동(제품 제조, 상품판매나 용역 제공 등)으로 얻은 수익액(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	상용	임시	자영업	무급	기타	합계	비고
수출액	매출액 중 해외로 수출한 매출액							
(2) 영업비용	손익계산서와 「매출원가」와 「판매비와 관리비」를 합한 비용							
가. 매출원가	매출액 창출에 직접적으로 소요된 매출원가 비용							
• 제조업(제조원가)	제품의 생산을 위해 투입한 손익계산서상 제조원가							
• 도소매업(매출원가)	상품매입비 중 직접적으로 투입한 손익계산서상 매출원가							
• 서비스업(매출원가)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투입한 손익계산서상 매출원가							
나. 판매비와 관리비	매출원가를 제외한 인건비, 임차료, 기타영업비용 등							
(3) 영업이익	* 영업이익 = (1) 매출액 - (2) 영업비용 (손익계산서상의 영업이익)							

### 8-1 스포츠산업 비중 내수·수출 및 스포츠산업·비스포츠산업 비중을 구분하여 기업하여 주십시오. (단위 : %)

총 매출액 비중 (①+②+③+④)	내수 매출액 비중		수출 매출액 비중	
	① 스포츠산업	② 비 스포츠산업	③ 스포츠산업	④ 비 스포츠산업
100.0%				

※ 내수 매출액 및 수출 매출액 비중을 스포츠산업과 비 스포츠산업으로 구분하여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작성

### 9 사업체 경영현황 전년대비 국가경제 상황과는 상관없이 오르지 사업체의 입장에서 전년도와 대비하여 경영 현황 및 전망을 기업하여 주십시오.

2013년(2012년 대비 증가율)	2014년(2013년 대비 증가율)
( )%	( )%

※ 증가율은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작성하며, 2014년 매출액이 2013년 대비 55% 증가가 예상될 경우 +55%, 10.0% 감소가 예상될 경우 -100%로 기입

### 10 사업의 종류 각 사업체의 「사업의 종류」를 1~3에 걸쳐 / 표시하고, 여러 예시와 같이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업하여 주십시오.

사업의 종류	사업 내용 무엇을 제조, 서비스 내용 / 누구에게 / 생산-재고하였는가?	비고
(예시)	· 스포츠외류(체육복, 등산복 등)를 제조 · 열풍용제품(팬트, 침낭)을 제조 · 당구장수영장공모연습장 등을 운영 · 자정거를 일반소비자에게 소매 · 폐견도를 학생을(또는 일반인들) 대상으로 코스	
1 스포츠용품업 -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 운동 및 경기용품, 유동품 및 임대업		→ 11-1 항목으로
2 스포츠시설업 - 스포츠 시설 운영업, 스포츠시설 건설업		→ 11-2 항목으로
3 스포츠서비스업 - 스포츠경기서비스업(스포츠경기, 피팅업, 마케팅업), 스포츠경영서비스업(스포츠 마케팅), 스포츠스포츠기반, 기타 스포츠서비스업(제빙, 여행업 등)		→ 11a 항목으로

### 11 특성항목

#### 11-1 상품별 구성비 스포츠용품별 내수 및 수출금액을 기업한 후 어떤 다시 품종별로 구분하여 기업하여 주십시오.

	금액 (백만원)	구성비 (%)						
		합계	스포츠 음료	스포츠 의류	스포츠 신발	공구	라켓류	기타
1 스포츠용품별 내수		100.0%						
2 스포츠용품별 수출		100.0%						

※ 구성비는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작성하며 수입은 전체를 수입을 기준으로 작성

#### 11-2 연간 영업개월 수 및 이용인원(고객 수) 2013년 영업한 개월 수와 연간 이용인원 수를 기업하여 주십시오.

	( ) 개월	( ) 명
1 연간 영업개월 수	( ) 개월	· 사업체에서 2013년 중에 정상적으로 영업한 개월 수(미집, 휴업 등은 제외) 한 달 간 정상적인 영업일수의 1/2 이상을 영업한 경우에는 1개월로 계산
2 연간 이용인원(고객) 수	( ) 명	· 2013년 1년간 사업체의 사업시설을 이용한 인텔(고객)수출 유로 입장객 또는 회원 수를 기준으로 기입

#### 11-3 매출액 고객연령별 구성비 매출액을 연령대별로 구분하여 기업하여 주십시오. (단위 : %)

매출액 비중	1	2	3	4	5	6
	7세 이하	8세~13세	14세~19세	20세~39세	40세~59세	60세 이상
100.0%						

※ 구성비는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작성

**12 설문문항**

※ 문항별로 가장 부른 것 하나만 ✓ 표시를 하고, 「기타」인 경우는 ( ) 안에 구체적으로 내용을 기입해 주십시오.

**12a 스포츠산업 대외경쟁력 강화부문**

스포츠산업이 대외 경쟁력을 갖기 위하여 가장 필요한 부문은 무엇입니까?

- |                         |               |
|-------------------------|---------------|
| 1 전문인력양성                | 2 국산제품 품질 제고  |
| 3 자체브랜드 개발 및 브랜드 인지도 제고 | 4 홍보 및 마케팅 강화 |
| 5 다양화·전문화               | 6 관련 정책부처 지원  |
| 7 산·학·연 협력강화            | 8 기타( )       |

**12b 스포츠산업 육성·발전 장애요인**

스포츠산업이 육성·발전하는데 가장 장애가 되는 요인은 무엇입니까?

- |              |                  |
|--------------|------------------|
| 1 전문인력부족     | 2 사업체 규모 영세성     |
| 3 자금부족       | 4 기술정보 및 시장정보 부족 |
| 5 제도 및 규제 과다 | 6 외국업체의 시장침식     |
| 7 정부 지원 미흡   | 8 기타( )          |

**12c 스포츠산업 육성·발전 지원부문**

스포츠산업을 육성·발전하기 위하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부문은 무엇입니까?

- |                   |                                     |
|-------------------|-------------------------------------|
| 1 전문인력양성지원        | 2 자금지원 확대(융자확대 등)                   |
| 3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 4 스포츠용품 인증제도(ISO마크) 활성화 및 국제인증획득 지원 |
| 5 스포츠산업 종합정보망 구축  | 6 각종 국제 대회 유치(월드컵, 올림픽 등)           |
| 7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진출지원 | 8 기타( )                             |

**12d 귀사의 스포츠산업 매출 증대 방안**

귀사가 매출 증대 방안으로 향후 계획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 |               |                    |
|---------------|--------------------|
| 1 전문인력 채용     | 2 자체 브랜드 및 신규제품 개발 |
| 3 홍보 및 마케팅 강화 | 4 니시시장 확대          |
| 5 해외시장 진출 확대  | 6 기타( )            |

비고	· 주·제업 및 매출액 증감 사유 등 특이사항을 기입하여 주십시오.		응답자	조사담당자
		부서		
		성명		
		전화	( ) - ( ) - ( )	( ) - ( ) - ( )

**13 정부지원사업**

**13a 정부지원사업 수혜 여부** 귀 사업체는 2013년 1년간 정부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 1 예 → 132항으로      2 아니오 → 설문 종료

**13b 수혜 정부지원사업 종류** 지원 받은 정부지원사업 종류는 무엇입니까?

구분	지원 기관	구분	지원 기관
1 자금지원제도		2 세제지원제도	
3 인력지원제도		4 기술지원제도	
5 콘텐츠지원제도		6 정보화지원제도	
7 수출지원제도		8 기타	

☎ 조사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발행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조사수행기관

-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개발원

❖ 본 통계보고서의 저작권은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개발원에 있으며, 승인 없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없습니다. 무단복제나 도용은 저작권법(제7조 5항)에 의해 금지되어 있습니다.

Copyright(c)2013 by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ll contents can not be copied without permission.

